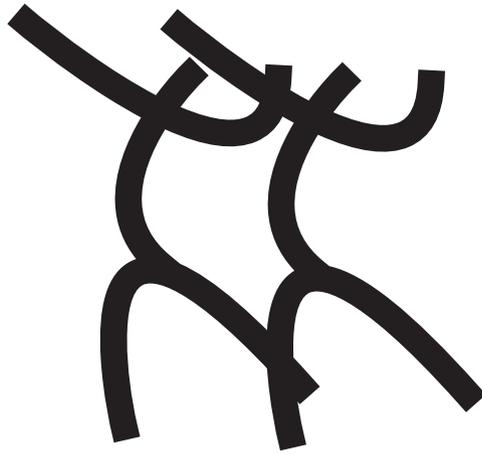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10-370)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02호

Tel: 02-745-7942, Fax: 02-744-7916 • [www.chingusai.net](http://www.chingusai.net) • Email: [chingu@chingusai.net](mailto:chingu@chingusai.net)



## 발간사

동성애자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라는 혈연 공동체 의미의 가족이 있기도 하지만, 서로를 애뜻하게 사랑하는 동성애자 애인과 서로를 의지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성애자 친구들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비록 혈연 공동체처럼 같은 공간에 주거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만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성애자들은 결혼제도를 통해 분가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독립합니다. 동성애자들 중에는 동성애자 애인과 함께 사는 공간을 꾸리며 민법에서 말하는 부부의 역할처럼 동거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다만 동성애자 커플들은 결혼제도를 통해 결혼할 수 없습니다. 2004년 3월 게이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고 주소지 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구청 측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간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법한 혼인신고로 수리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가족구성권은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혈연 중심의 가족만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만이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개인이 주체화하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동성 커플이 증가하면서 독신가족, 자발적 무자녀가족, 동거가족, 동성 커플 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얼굴을 드러내는 이유는 기존 가족체계가 주는 경직성과 부자연스러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공간을 꾸려나가는 지극히 인간다운 태도의 발현인 것입니다.

동성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가 있고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충분히 교감하며 동성애자 애인과 그리고 동성애자 친구와 살 권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개개인의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형태가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

#### 4 ●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 발간사

서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동성 커플 또는 동성애자 가족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동성 커플, 동성애자 가족은 가족을 구성하려는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다양한 차별만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책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은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법률적 접근, 그리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하여 알아야하고, 생각해봐야 할 다양한 자료를 실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지는 못했지만,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한 발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로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이종현

## 머리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2006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기반확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최근 서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거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역시도 이성애자와 동등하게 가족으로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도 하고,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거나 새롭게 꾸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성애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논의 역시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인권 자료를 축적하자는 취지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을 제작합니다. 기존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형성하여 한 자리에 엮음으로써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인권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완성된 자료집은 성적 소수자 단체, 인권 단체, 여성 단체, 정부 기관 및 전국의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활용도 높은 문헌이자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목차

### 제1부 :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 09

- 1-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발표대회 “스피크아웃”> 및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 사례 정리 · 11
- 1-2. 동성애자 가족의 심층 인터뷰 · 27
- 1-3. 각종 차별 실태 정리 및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처 방법 · 55

### 제2부 :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법률적 접근 · 61

- 2-1. 동성혼과 가족제도 -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63
- 2-2.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입법례 - 장복희 카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 77

### 제3부 :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준비팀 · 99

- 3-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필요성 · 101
- 3-2.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목표 · 104
- 3-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영역 · 106
- 3-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주체 및 연대 단위 · 108
- 3-5.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망 · 110

### 부록 · 117

- 0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국내서적 · 117
- 02.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국내비정기간행물 · 118
- 0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해외 단체 · 119
- 0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해외 서적 및 비정기 간행물 · 121



## 제 1부

#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장으로서, 동성애자로서 구성된 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동성애자의 가족이야기는 무엇인지를 담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알립니다. 먼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주최한 2006년 5월의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 “스피크 아웃!(Speak Out!)”>과 같은 해 6월의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의 사례를 체계화한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로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심층 면접하여 현실적 문제들을 점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차별 실태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대처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1-1.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 “스피크 아웃”> 및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 사례정리

### 1-1-1.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 “스피크 아웃” 정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는 2006년 5월 21일 오후 대학로 글로브소극장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 “스피크 아웃!(Speak Out!)”>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이미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직접 자신의 가족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대중 앞에서 육성으로 전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에 참가한 일곱 가족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신는다.

#### 1) 발표자 1 - 천정남 씨

**발표 내용:** 올해 37살 게이이다. 6년 동안 파트너와 동거를 하였다. 가족들은 우리를 커플이라고 인정한다. 함께 고향집에 가기도 하고 가족들이 우리가 동거하는 집에 오기도 한다. 두 달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병원에서는 가족 동의를 요구했다. 그래서 나와 동거를 오랫동안 한 내 파트너가 가족으로서 사인을 하려 하였으나, 동거하는 남자 파트너는 가능하지 않다고 병원 측은 말했다. 부모님도 멀리 사시기 때문에 사인해 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다고 하자 병원 측에서는 나의 형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얻었고, 그것을 확인한 뒤에야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내 파트너는 내가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을 때 간호를 해 주고 보살펴 주는 실질적인 보호자이며 가족이다. 그런데 동성 파트너는 이러한 때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의 수술은 경미한 것이어서 다행이었지만, 긴급하고 큰 일이 있을 때, 또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가 제도적으로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나는 동성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둘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와 같은 가족도 일정한 보호와 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동성애자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성애자 가족들은 피해를 입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 질의응답

---

**Q.** 이성 부부의 경우에는 둘이 싸움이 났을 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 둘의 경우는 어떤가?

**A.** 우리는 공개적으로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에도 신경이 쓰인다. 부모님, 동료들, 친구들, 학교 선배들이 다 알고 있어서 싸우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다. 멀리 사시는 어머님은 수시로 전화하셔서 내 파트너를 꼭 바꿔달라고 하신다. 옆에 있는지, 함께 잘 지내는지, 서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신다. 이성애자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하면서 싸웠을 때 상담도 하면서 지낸다. 친구의 부인과 얘기하면서 풀기도 한다.

**Q.** 동성애자 커플의 경우 부부 동반 모임 참석 때문에 곤란할 때가 많다. 모두에게 커밍아웃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럼없이 잘 나가는가?

**A.** 우리는 부부 동반 모임뿐만 아니라 대학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부부 동반 여행에도 아무렇지 않게 같이 잘 나가고 즐긴다.

**Q.** 부모님께서 둘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인정을 했나? 아니면 서서히 인정했는가?

**A.** 이성애자 커플인 경우에도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다. 동성애자인 경우에는 잘 모르고 낯설기 때문에 더 어렵다. 처음에 집에 얘기했을 때에는 집을 나가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서로 이해와 화해를 해 나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 2) 발표자 2 - 김명우 씨

**발표 내용:** 아마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는 내 나이가 제일 많을 것이다. 51세이다. 예전에 15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있었다. 헤어졌을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 이성 부부가 이혼했을 때처럼 재산 분할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해서 경제력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제도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도 재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2000년도에 만난 애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녀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때 애인은 대학생이었다.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나는 자영업을 하는데, 세금을 낼 때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더라.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다. 그때서야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전까지는 평생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동성애자 가족들도 가족 구성이 인정받고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까 천정남 씨가 이야기했던 병원에서의 일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당했다. 항상 처리가 늦어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편견 없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성애자이건 동성애자이건 사람은 똑같은 것 아니겠는가. 편견과 차별은 없어야 한다.

### 질의응답

---

Q.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A. 전혀 없다. 어떤 때에는 내가 더 애기 같다. (웃음)

Q. 15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졌을 때 재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했나?

A. 문제가 많았다. 나에게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다. 마흔이 넘었는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법적인 보장은 전혀 없었다.

Q. 동성혼이나 파트너십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A. 나이가 많다 보니 나의 사후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내 사후에는 모든 상속의 권리가 내 형제들에게만 있지 내 파트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미리 어떻게 하자고 써둔다던가 보험의 수익자를 내 파트너로 지정한 정도이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빨리 동성혼과 같은 것이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14 ●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 제1부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Q. 현재의 파트너에 대해 부양가족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A. 정식으로 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세무서에서 가족이 있느냐고 묻길래 있다고 말했다. 파트너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학에 다니는 조카와 함께 산다고 말하니 세금 혜택을 주더라.

Q. 보험 수익자로 파트너 지정이 가능했는가?  
A. 모든 보험은 아니지만 수익자 지정이 가능했다.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동성애자이고 내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기록해 둬으로써 되든 안 되든 내 파트너가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제들과도 다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니 이해할 것이다.

3) 발표자 3 – 물바람 씨

**발표 내용:** 우리는 애인 관계가 아닌 게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는 공동체 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대안 가족이다. 친구와 셋이서 살고 있다. 우리와 같은 형태로도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나왔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서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으며 위안이 된다. 외로움도 덜고 일상사를 함께 나누며 나 자신을 잘 추스르게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가족이 있어서 버텨낼 힘과 도움을 얻는다.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살고 있다. 빨래나 청소 같은 가사 노동에서부터 귀가 시간이라든가 애인이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한 것까지 생활 수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서로의 남자는 절대 넘보지 않는다' 라는 수칙도 있다.(일동 웃음)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도 함께 정하고 사는 이런 가족 생활이 즐겁다.

질의응답

---

Q. 혹시 함께 사는 친구 때문에 애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친 적이 없는지?  
A. 일단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있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사랑은 언제고 다시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내 가족 때문에 연인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더 관계가 잘 되도록 도움이 된다. 얼마 전 애인이 생겼을 때에는 내 파트너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계속 가족으로 함께 살아온 친구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계속 같이 살고 싶다. 혹시 서로 파트너가 생긴다고 해도 함께 모여 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 4) 발표자 4 - 이경 씨

**발표 내용:** 나이는 28세이고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는 레즈비언이다.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지 못하지만 서로 동반자로서 함께 지내고 있다. 활동을 하다 보니 동성애자 억압이 가족 제도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도 하고,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동성애자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내 파트너와 함께 생활을 꾸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앞의 천정남 씨와 같은 경우이다. 많은 동성애자가 이런 일 때문에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작년 초에 내 파트너가 갑작스레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동의서를 쓰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가족 이상의 사이라고 말을 해도 둘은 친구 사이이고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1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면 입원 동의서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어쩔 수 없이 친한 게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그가 남편인 것처럼 말을 해서 입원을 할 수 있었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파트너는 여기 있는데 게이가 와서 사인을 했었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평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옆에서 간호해 주고 보살피 주고 싶어지게 마련이다. 지지해주고 보조해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파트너는 혼자 사는데, 몸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함께 살고 싶지만 홀로 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일일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어머니는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모른다. 어머니는 자꾸만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마 내가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가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시겠지만, 내가 파트너와 함께 살겠다고 나온다면 잘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가족들은 인정을 받지

도 못하고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여러 제도적인 보장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고자 고민하는 동성애자 가족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다. 그때 나는 행복했다. 그 부케에는 나도 당당하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친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법과 제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동성애자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요즘 아이를 무척 갖고 싶다. 제도적인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나도 아이를 낳고 기르며 행복한 레즈비언으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질의응답

---

Q. 동성애자 파트너 관계를 제도화 할 때, 동성혼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파트너십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A. 나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이성애자 부부와 똑같은 결혼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고 파트너십 같은 다양한 동거 형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트너십의 경우는 꼭 커플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결혼이 이성애자만이 가지는 신성한 권리라고 여겨 동성혼을 부정한다면 동성애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싸워야 한다.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에게만큼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발표자 5 - S 씨와 K 씨

**발표 내용:** 우리는 S와 K, 국제 게이 커플 가족이다. 만난 지 9년이 되었고 함께 산 지는 3년이 넘었다. S는 한국인이고 K는 일본인이다. 우리는 국제 커플이어서 문화가 달라 가끔 문제를 겪는다. K와 S의 어머니 사이의 문제나 함께 살고 있는 S의 동생 간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 일본에서는 어머니가 자식들의 집에 와도 살림에 개입하거나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데 S의 어머니가 우리집에 오래 머물고 살림을 하시면 K가 익숙치않아 한다. 가령 S의 어머니가 우리집에 오면 어머니는 설거지를 할 때 우리가 평소에 놓는 그릇의 위치와 달리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릇을 놓으며 설거지를 하신다. 이럴 때 K는 반발한다. 현재 S의 동생도 함께 살고 있다. S의 동생은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를 내지 않는데, K는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런 문화 차이를 겪으면서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함께 게이 커플로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K가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K가 직업을 잃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함께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직업이 없게 되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친척, 직계 가족,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서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는 아픔이 절박하다. K의 비자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중간에 반 년 정도 K가 직장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때는 K가 일본에 다녀와야 했다. 비용 부담도 꽤 컸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K가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불안하다.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 질의응답

---

**Q.** 둘의 관계를 가족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A.** S는 2남 2녀의 장남인데, 형제들에게는 다 커밍아웃을 했고 형제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다. 어머니께서도 거의 아시는 것 같다.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고향에 내려가실 때마다 둘이서 잘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아프면 안 된다 같은 말씀을 꼭 하신다. S의 고모님도 가끔씩 전화를 걸어서 둘이 잘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 우리 둘이 게이 커플이라고 해서 가족들과의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는 것 같다. 있다고 해도 보통의 이성 부부와 비슷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지금 서로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K 역시 부모님이 우리 둘의 관계를 알고 있고 함께 일본집에 갈 때도 있고, 일본에서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우리집에 머문 적도 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다.

**Q.** 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A.**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실에서 만났다. 98년도에 만나 99년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 6) 발표자 6 - 최현숙 씨

**발표 내용:**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최현숙이다. 현재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 결혼을 했던 레즈비언의 문제를 얘기해 보겠다. 1980년에 결혼해서 2005년도까지 결혼 생활을 했었다. 아들이 둘이다. 현재 23세 26세이다. 재작년에 나는 그간의 결혼생활을 끊고 집에서 독립하였다. 그 이후로 여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 자기가 아내에게 거부당했다는,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은 것 같다. 현재 이혼 소송을 내가 먼저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이혼 사유는 뒤늦게 깨달은 나의 동성애 정체성과 가정 폭력, 소통 불가로 제기하였다. 동성애 정체성을 이유로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첫 번째 사례이다. 나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문제는 별로 없었다.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었고 나의 동성애정체성에 대해 별로 반대하는 것이 없었다.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충분히 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란 아이들이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아무래도 불편함을 겪는 것 같기는 했다. 이혼이라는 과정, 별거를 거치면서 주변 친척들에게 나의 성적 정체성을 알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적인 불편함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해시키는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을 겪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정 형제 간에는 큰 문제까지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문제가 가장 컸다. 다른 가족들은 부모님께 밝히는 것은 반대하고 나도 동의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별거 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어야 했다. 자꾸만 왜곡되게 전달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내가 별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년 12월에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나는 신랑의 어머니로서 분명 참여하고 싶었다. 내 생활을 속이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 마음이 매우 아프다. 가부장적 제도에 너는 들러리로 오라는 방식이 되어버려서 참석하지 못했다. 다른 기혼이었던 여성 동성애자들 또 결혼 상태에 있는 여성 동성애자들 역시 뒤늦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한계,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인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기혼 여성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제도에서 당장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 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결혼 제도를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여성 동성애자들의 겪는 아픔 역시 문제이다. 주위로부터 비난과 모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다. 또한 재산분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절대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성애 정체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보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질의응답

Q.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되었나?

A. 나는 정당하다는 신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Q. 게이와 레즈비언이 계약 결혼을 준비하는 인터넷 모임이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나는 옳은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가, 사회가 옳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사회가 함께 책임지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반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동성애자들의 현실에 맞고 동성애자들을 지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Q.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가?

A. 나는 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랑이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물네 살에 선택한 결정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결혼 제도는 비인간적인 제도일 것이다.

Q. 언제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가능할까?

A.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 나는 그것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굳이 동성혼 합법화의 형태가 아니라도 다양한 가족들이 제도화되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해 정부가 문제 많은 제도를 먼저 만들기 전에 다양한 가족에 대해 운동을 하고 있는 진영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제도여야 차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의미가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 7) 발표자 7 - 허여 씨

**발표 내용:** 44세 게이 허여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동성혼 배우자와 6년째 함께 살고 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첫 번째로는 동성 가족 만들기, 그 다음으로는 이 사회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내 파트너와 조출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에는 어머니께 내 파트너를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었다. 그러나 1년 쯤 지나고 나니 어머니께서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눈치 채셨다. 어머니께서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으시길래 어렵게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분노와 허탈감을 보이셨고 ‘우리집은 망했다’, ‘대가 끊겼다’ 면서 알아 누우셨다. 그러나 나중에는 인정하셨다. 누나들과 매형들은 우리를 지지해 주었다. 막내누나만 나에게 대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싫어한다. 막내누나는 나에게 우리를 인정해 줄 테니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강요하였다. 알고 보니 막내누나는 나의 이야기가 시댁에 알려질까 두려워했던 것 같다. 내 조카의 결혼식에도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다. 시댁이 알까봐, 또 사위가 알게 될까봐 우리를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한번 ‘뒤집어엎어야’ 했다. 내 파트너의 형은 동성애 혐오증이 매우 심하다. 내가 파트너와 함께 파트너의 아버지 생신이나 어머니 제사, 명절 등에 절대 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버지는 우리 둘 사이가 각별한 것은 알지만 배우자 관계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으시다. 우리는 뼈꾸기 등지에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뼈꾸기가 이미 등지에 있던 알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듯, 이 이성애 우월주의의 사회는 우리를 자꾸만 등지 바깥으로 내몰고 깨뜨리려고 하며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뼈꾸기처럼 동성애를 혐오하고 억압하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는 가족들에 대항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말하고 보여준다. 어머니께 내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게 되면 누가 내 옆에 있어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내 파트너의 존재를 인식하시게 하고 파트너의 귀가가 늦으면 내 파트너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린다. 그렇게 하니 우리 둘을 서로 갈라놓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듯하다. 이렇듯 동성애자의 가족 만들기는 충돌의 연속인 파이팅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액팅이며, 계속해서 만들어어나가는 과정인 두잉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직장에서의 차별이 많다. 나의 직장에서 다른 이성 결혼을 한 사람들은 배우자 수당을 월 3만원씩 받는다. 나는 그것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을 계산하면 141만원이다. 내 파트너는 나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것도 계산하면 150여만 원이다. 또한 나는 결혼 휴가, 배우자 부모형제의 장례, 환갑 등의 경조사 휴가를 받지 못했다. 파트너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가족간병휴가도 얻지 못했다. 또 한 TV 프로그램

에 동성애자로서 나갔더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부장이 직장에 나를 아우팅시켰다. 사회 보장과 관련한 차별도 매우 크다. 국민 연금의 경우 내가 이제까지 15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는데, 내가 사망한다고 해도 동성 배우자는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말했다. 또 결혼 전에 들었던 각종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것을 일일이 친구 관계로서 내 파트너로 새로 지정해야만 했다. 얼마 전에 새로 보험에 들게 되었는데 그때 수익자와의 관계를 '동성혼 배우자' 라고 적었다. 직원이 별 말 없이 입력하였다. 이렇게라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만 가능했다. 동성 배우자가 받을 수가 없다. 또 부부한정특약과 같은 혜택이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못했다.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상속도 큰 문제다. 우리는 서로의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를 만나볼 생각이다. 이미 다른 분들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의료적 친권도 가지지 못하며, 산재 보험에 따른 보상금도 내 파트너는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성적 소수자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 내 누나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인정해줄 테니 그냥 살라고 하는 것으로는 평등을 이루지 못한다. 법과 제도로 보장되어야만 진정한 평등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파트너십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을 통해 동성애자들 역시 파트너십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관계 해소 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이나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동성애와 동성혼, 동성 가족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 동성 가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우리 당사자들이 나서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 싸우고 보여주고 가꾸어냈으면 좋겠다.

## 질의응답

---

**Q.**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내가 이제까지 겪은 차별과 억압은 현실이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대학원에서 정신간호학을 전공하면서 성적 소수자의 정신 건강을 공부하게 되었다. 성적 소수자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공부하면서 나의 지식이 큰 용기가 되고 힘을 주었다. 네덜란드는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데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도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1-2.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 사례 정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는 2006년 6월 10일 오후 종묘 공원에서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애자로서 구성된 가족들에게 일종의 대안인증서인 ‘예쁜가족증’을 발급하고, 미리 추천 및 신청을 받아 선정한 동성애자 가족들에게 ‘예쁜가족상’을 수여하였다. 이 대회는 이들 가족을 이미 충분히 “예쁜” 가족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이 가족들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건강함, 대안성, 진취성 등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 ‘예쁜가족상’을 수상한 네 가족이 직접 전해준 가족 이야기를 정리하여 신는다.

### 1) 허+여 게이 동성혼 가족

허님과 여님은 2000년 3월에 처음 만났다. 100일 동안 연애를 하였고 2000년 6월 25일에 소위 정한수를 떠놓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첫해에는 그냥 친구로 함께 산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고 1년 뒤에 양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였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무척이나 당황해 하였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들을 받아주었다. 형제의 호모포비아적인 모습에서 상처도 받았지만 지금은 잘 극복한 상태이다. 현재 이들 부부는 여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막내동이 딸똥이(강아지)까지 네 식구가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다. 이 부부는 그렇게 생각한다. 모든 인간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듯이 동성애자에게도 이런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또한 동성애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또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가족은 이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허+여 가족은 이번 행사에 ‘예쁜가족’으로 선정되어 큰 영광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 2) 최현숙+겨울나무 가족

최현숙 씨와 겨울나무 씨는 2004년 7월 경에 레즈비언 친구들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그 후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함께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왔다. 소개해 준 친구는 두 명 모두 인류애, 진보 등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빼면 대화가 되지 않으니 두 사람을 아예 한데 묶어버려서 둘이서 실컷

진보적 인류애를 좇고 살라며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최현숙 씨는 겨울나무씨가 자신과 열네 살의 나이차가 있는데다가, 자신은 한 남자와의 결혼 생활 24년 동안 했었고 당시 24세와 21세의 두 아들을 둔 상황이었지만 그것들이 전혀 문제로 안 보일 정도로 겨울나무가 자신을 사로잡는 여성이었다고 고백한다. 또한 자신 역시도 얼마나 멋있으면 그런 조건의 자신에게 겨울나무 씨가 빠졌겠냐는 말을 덧붙인다. 이 가족은 두 사람 다 각자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한 집에 살아도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커플 간 갈등을 오히려 줄이기도 하고 서로를 잘 배려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의 평등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족은, 가사 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하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쓰는 가계부를 서로 얼마나 제대로 정리했냐면서 투닥거리며 즐거운 생활을 누린다고 한다. 이 가족은 이 말을 꼭 덧붙여 달라고 한다. “당당한 행복! 해피 프라이드!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아자아자!!!”

### 3) 파랑이네 가족

게이 친구 사이인 한중렬과 김병석의 만남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각자의 애인을 만나는데 우여곡절을 거치며 같이 살기도 하고 따로 살기도 하던 두 사람의 가족 구성은 2002년 이성애자 여성 사맛과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완성된다. 세 사람의 동거는 2003년 옥수동의 산비탈 마을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연신내의 조용하고 공기 맑은 동네에 자리 잡은 지 1년이 넘었으니 햇수로만 만 사년 째에 이르고 있다. 이 가족은 현재 사맛 씨, 한중렬 씨와 그가 사랑하는 오스 씨, 김병석 씨와 러시안블루인 고양이 파랑이로 구성되어 좌충우돌 살아가고 있다. 한중렬 씨는 젠더문화 사이트와 해울출판사를 운영하는 “편집자”이고, 사맛 씨는 정말 귀신같은 “교정꾼”이다. 그리고 병석 씨는 책을 만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한다. 그런데 그게 사실 돈이 안 되는 일이어서 사맛 씨는 약국에 가서 돈을 벌고, 중렬 씨는 소설을 쓰고, 병석 씨는 가물에 콩 나듯 들어오는 웹이나 인쇄물 디자인을 해서 생활한다고 한다. 이 다섯 식구는 서로 주말 부부로서 사랑하기도 하고, 앙숙으로 다투는 병석 씨와 고양이 파랑이처럼 왕왕대며 지내기도 하고, 집안 일을 서로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나누어 사는 등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 가족은 스스로를 그렇게 환상적인 가족도, 발전적인 공동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서로가 함께 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토닥거리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개그콘서트를 틀어놓은 채 홍차 한 잔 씩 들고 거실에 모여 앉아 웃다가 보면, 아마도 이런 것이야말로 ‘가족’이 아닐까 하는 확신이 든다고 말한다.

## 4) 지유네 가족

이 가족은 2002년 여름, 같이 활동하던 이반 커뮤니티에서 준 씨가 성소수자인권단체를 지지, 지원하는 후원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내고 그곳에 지유 씨가 참여하면서 시작된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간 준 씨와 한국에 있던 지유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준의 고백으로 선후배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흐르게 되었다. 이듬해 두 사람은 결혼 약속을 하고 그해 겨울, 한국에서 지인들과 지유 씨의 친동생을 초대하여 결혼 파티를 하였다. 그러나 일과 학업 등으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만나는 국제 부부로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다가 2006년 2월 지유 씨가 캐나다행을 택하여 함께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 준 씨와 지유씨 커플은 캐나다에서 결혼식까지 올림으로써 올려 캐나다 내에서는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유 씨네 가족은 지유 씨와 준 씨, 강아지 강바람, 그리고 지유 씨와 준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캐나다에서의 결혼식에 증인을 서 주었던 준 씨의 아들, 이렇게 넷이다. 그리고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준 씨와 지유 씨의 아이로 가족을 더 늘릴 예정이다. 이 둘은 서로 동등한 위치와 권리를 가지고 가족을 꾸려가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지 못해도 항상 가슴으로 품고 있는 가족이라고 한다. 이 가족은 그 동안 힘겹게 운동해왔던 국내외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의 성과로 두 사람이 가족을 꾸리는 데에 많은 지지를 받으며 아찔할 정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 두 사람은 남남이며 아무런 혜택도,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인정받고 지지받는 것처럼 가슴 벅찬 일은 없기에 이 가족은 이곳에서 '예쁜가족증'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들은 분명, '가족'이기 때문이다.

MEMO

---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dotted border, intended for taking notes. The box is positioned below the 'MEMO' header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s vertical space.



## 1-2. 동성애자 가족의 심층 인터뷰

친구사이에서는 2006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현재의 법률이나 제도적 테두리로서는 보호받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가족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혹은 있었던) 동성애자 가족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인터뷰는 동성애자로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 중 한 가족씩 선정하여 총 다섯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동성애자 가족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고충을 비롯하여 각 가족들이 겪어온, 혹은 지금도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현재 동성애자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과연 무엇인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왜 필요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일곱 분께 감사드리며 인터뷰를 한 이들의 아웃팅 문제를 고려하여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다.

### 1-2-1. 공동체적 개념이 있는 동성애자가족제도를 꿈꾸는 레즈비언 커플. 30대

중반의 프리랜서인 마야씨와 30대 후반의 허씨는 6년째 동거하고 있는 레즈비언 커플이다.

Q. 두 사람이 사귀고 동거해서 가족을 이루게 된 경위를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 마야 : 2001년 1월에 만나 내년이면 6년째이고 사귀자마자, 즉 서로를 애인으로 받아들이자마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허씨가 집에 놀러 왔다가 그 후로 집에 가지 않길래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었어요. 동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라든가 하는 준비 기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Q. 같이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마야 : 현재로서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올 때는 허씨와 만나기 전이라서요. 그 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Q. 생활비등 소득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마야 : 각자 자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 부분은 서로 일정금액을 내서 한 통장에서 관리합니다. 생활비 통장과 생활비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그 통장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한건 제가 소득세면제를 받으려고 그랬고요.

Q. 가사분담은 어떻게 하는지요?

● 마야 : 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리는 허씨, 청소도 허씨, 빨래도 허씨가 해요. (웃음)

● 허 : 초기 잠시에만 요리나 청소를 마야씨가 하더니 그 담부터는 전혀 안 해서,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요리와 청소대부분은 제가 하고 빨래와 화장실 청소와 공부방 청소만 마야씨가 합니다.

Q. 공통의 취미생활은 있습니까?

● 마야: 취미는 거의 같아요. 공연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다만 운동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Q. 일상생활에서 의견의 불일치나 다툼이 발생할 경우는 없습니까?

● 허 : 초기엔 다툼이 많이 있었죠.

● 마야 : 주로 집안일과 성격 때문에 많이 있었죠. 저는 고양이와 비슷하다면 허씨는 개와 비슷한 성격이에요 허씨가 처음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계속 이야기 하면서 관계를 풀었고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리더군요. 현실적으로 제일 심하게 부딪친 문제는 청소 부분이었어요 허씨는 소위 말하는 '레즈비언 청소변태' 라 할 정도로 결벽증이 있는데 제가 청소를 하더라도 허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청소를 다시 하다가 몸에 병이 생길 정도였죠. 그 문제로 한동안 싸우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기로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요리같은 경우엔 허씨가 더 잘해서 지금은 허씨가 다하고 있어요.

Q. 다툼의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마야 : 말다툼을 하면 각자 방에서 심사숙고한 답에 합일점을 찾죠

Q. 커밍아웃 여부는?

● 마야 : 안 했습니다. 저의 집안에서는 친구랑 생활공동체를 꾸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점을

계속 집에 말했고 나의 미래는 이 사람과 함께 설계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집에서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둘이서 같은 계통의 일을 하며 함께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다만 양쪽 집에서 공히 둘 사이의 진짜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알면서도 언어로써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겠지요.

**Q.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 마야 : 명절에는 각자 집안에서 지내요. 특히 상대방의 가족한테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일부러 허씨를 불러서 일을 다 시키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에 저의 집안 관계와 허씨 사이가 좋아졌어요.
- 허 : 저희 집에서는 마야씨를 막내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는 마야씨가 결혼하면 제가 혼자 될까봐 걱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별로 걱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Q. 집안에서 결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 마야, 허 : 다행히도 거의 강요를 안 합니다.

**Q.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마야 :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 동네가 문제인지 이웃들과 전혀 소통하는 부분이 없어요. 옆집과는 입주 때부터 알았지만 그저 인사만 하는 정도고, 산책 시 때면 만나는 사람과도 인사만 하는 정도입니다.

**Q. 직업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 마야 : 일단 직업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냥 동업자로 소개하다가 지금은 룸메이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Q. 서로의 친구분들하고는 자주 만나나요?**

- 마야 : 이성애자일 경우에는 커밍아웃한 친구들이고 주로 동성애자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날 경우에는 파트너로 소개합니다. 만났을 때 불편하거나 껄끄러운 친구들은 만나지 않지요. 레즈비언 솔로 친구들보다는 레즈비언 커플들과 주로 만납니다.

**Q. 둘의 관계를 잘 모르는 분이 결혼 등의 이야기를 꺼낼 때도 있나요?**

- 마야 : 네.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아,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놓치

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우리 둘의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그런 질문에도 능숙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 같아요.

Q. 두 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 있나요?

- 허 : 지금 당장이 힘들어서 생각을 못해봤어요
- 마야 : 저는 노후 연금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그건 수혜자를 선택할수 있어요. 아는 커플 중 한 커플은 수혜자를 서로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가족들에게 유산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할 거라고 하 더군요. 그 방법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보험을 하나 더 들고 서로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정도는 갖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좀 이상적인 것 같지만 어느 마을에 모여서 같이 살 수 있는 타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Q.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마야, 허 : 제 이름은 집안 가족 밑에 올라가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내시고 계신가요?

- 마야, 허 : 지금은 안 내고 있어요

Q. 의료보험 등에서 배우자 관계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 마야 : 많이 생각해 보고 있죠. 현재는 자동차 보험 등에 특약으로 누군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Q. 공동명의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가요?

- 마야 : 현실적으로 본다면 레즈비언 커플인 우리가 1가구 2주택을 가져도 둘의 관계를 부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등에서 이성애커플보다는 혜택을 받을 순 있겠지요.(웃음)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명의에 대한 생각을 고려중입니다.

Q. 두 분은 보험을 드신 게 있나요?

- 마야 :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 건강을 관리하는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재해시 혜택을 주는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Q. 두 분의 관계를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야, 허 :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Q. 입양을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세요?

- 마야 : 입양은 싫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를 싫어해서요. 대신 개를 좋아해요.
- 허 : 개를 입양해야죠.(웃음)
- 마야 : 독신자 법이 통과되면 입양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혼자 보다는 둘이 키우는게 좋겠지요. 동성애자 커플들은 실제로 많은 고민들을 한 다음에 입양을 선택할건데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할거예요. 다만 동성애 커플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런 과정이 힘들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네요.

Q.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마야 : 공동체의 개념이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통용되는 이성애적 결혼 같은 개념은 답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 허 : 마야씨와 같은 생각이예요

Q. 결혼권이나 파트너십 제도 등 동성애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는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 마야 허 : 등록을 하고 싶어요

Q. 가족구성권 운동에 대하여 조언 같은 게 있나요?

- 마야 : 동성애자만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대안 가족과 관련한 여러 가족 공동체를 포괄한 제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 허 : 독신자들을 위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택청약주택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요. 현재 동성애자들은 같이 살아가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법적 혜택이 있다하더라도 독신자로 남기를 결정하게 될 이들이 많을거니까요.

Q.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 마야 : 사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지금 당장 무슨 혜택을 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2-2. 커밍아웃을 기반으로 결혼권을 거쳐 파트너십까지 단계적 가족구성권을 꿈꾸는 조씨.** 40대 초반의 조씨(영화제작자)는 남성동성애자이고 과거 동성애인과의 동거관계가 해소되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Q. 예전에 동거하다 헤어지신 분과의 관계형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 대학시절, 그 남자 학과에서 연극을 준비한 적 있었는데 친구의 부탁으로 그 일을 도와주다가 만났습니다. 그 때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학교 졸업한 후에, 그러니까 13년만인 제가 서른 세살 때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 남자 쪽에서 제 기사가 실린 잡지를 보고 연락을 했더군요. 오랜 유학생할 끝에 귀국하여 한국에 친구가 없다며 한 번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자신이 게이라고 이야기했고 학창시절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애당초 그와는 가치관이나 생활환경이 달라 관심은 없었지만 당시 두 사람 다 솔로였던 상황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때라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애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Q. 동거를 시작한 계기는요?

● 그 남자는 혼자 살았고, 저는 그 전에 동거하던 애인과 결별 후 딱히 거주지가 없었던 처지였던 지라 만남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살림을 합쳤습니다.

Q. 그 후로 몇 년 정도 같이 사셨습니까?

● 오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2년 정도 지난 후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로 하고 큰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서 얻은 돈을 보태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들어간 거죠.

Q. 누구 명의로 얻은 집이었습니까?

● 그 사람 명의로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데 굳이 공동명의로 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성격상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면 '날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냐.' 하는 식으로 따지며 불화가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다.

Q.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요?

● 따로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사정 때문에 주소지를 집으로 할 수 없었죠. 말하자면

서류상으로 저는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었죠.

Q. 그때 두 분 다 직장이 있었나요?

- 저는 지금처럼 영화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잡지사 기자였습니다.

Q. 두 분 다 경제력 있는, 말하자면 소득이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공동의 소득 관리를 하셨나요?

- 저는 사업을 어렵게 했기에 큰 돈은 없었고, 그 남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제가 의존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그 쪽에서 팔 개월 정도 직장을 쉬며 생활비가 부족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 땐 제가 적금을 깨어 충당했었습니다. 그 외엔 대체로 그 사람 통장을 받아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따로 제 통장을 갖지는 않았구요. 생활비, 공과금 관리도 다 제가 했구요. 대신 가계부를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써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써야 할 걸 못 쓴 건 아니었고, 그 남자 성격상 매사 확인하고 싶어해서요.

Q. 가사노동의 분담은 어떻게 하셨어요?

- 그 남자는 청소만 좀 도와줬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하구요. 처음엔 같이 하려 했는데 제 성격상 그 사람이 대충하는 걸 그냥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럴 경우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쪽에서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제가 못 참았죠.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쪽에선 아예 할 생각을 안 했어요. 나중에 헤어질 땐 그 남자가 저한테 '너 때문에 내가 자립형 인간이 못 되었다.' 면서 싫은 소리를 하기도 했지요.

Q. 데이트나 여가생활 할 때 취미는 어땠어요?

- 취미는 잘 맞았습니다. 또한 그 남자는 제가 문외한이었던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 거의 매니아 수준이었던 덕분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죠.

Q. 서로 간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은?

- 성격이 안 맞았죠. 그는 애정결핍이랄까, 단 한순간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못 견디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자하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곤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물의를 많이 일으켰고요.

Q. 폭력적인 성향을 처음 알게 된 후 관계 유지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 동거를 시작한 처음 8개월 동안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친절하게 잘 해줬고 우리 가족 들한테도 경조사를 먼저 챙겨준다거나 하는 등 제가 못하던 부분까지 잘했거든요.

저는 원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뺨을 맞았을 때는 상당히 놀랐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저는 그냥 실수였나 생각했었고요. 그러다가 폭력은 점점 심각해졌고 심지어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간 적도 있었어요. 집기를 던지고 문을 부수는 등... 헤어질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매달리니까 헤어지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일년에 몇 번만 참으면 되겠지 하며 계속 끌었습니다.

Q. 가족에게의 커밍아웃 여부는?

● 그 남자의 남동생 이외에 어머니, 여동생은 그가 동성애자이고 저랑 애인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 인근에 살아서 왕래도 가끔 했고, 특히 그쪽 어머니는 저를 많이 이뻐하셨죠. 살림도 잘 하고 당신의 아들을 잘 보살펴준다고... 우리 집에서는 여동생 둘이 알고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다만 직장에서는 다 알았죠.

Q. 둘이 동거했을 때 상대방 어머니,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 어머니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무조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을 때도 마치 며느리한테 하듯이, '나가 참아라... 그 순간만 참으면 우리 아들은 다 괜찮아진다.' 이런 식이었죠. 엄마입장에선 우리 아들은 다 괜찮은데 성격상 약간의 결함만 있는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니가 왜 떠나느냐'면서 싸늘하게 대하시더군요. 그가 나한테 행한 폭력 같은 건 대단치 않게 생각하구요. 여동생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저희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위기상황이 벌어지면 여동생한테 구원을 요청하곤 했는데 그녀가 와서 뒷수습을 하고 부서진 집기들 고치고 하는 등 뒤치다꺼리를 많이 했습니다.

Q. 직장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나요?

● 그 남자는 자기를 드러내 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다니며 인사를 시켜주는 걸 좋아했죠. 안 시켜주면 '내가 부끄러워 그러느냐' 라고 하며 싫어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직장동료들에게도 잘 대해줬습니다. 처음 폭행을 당했을 때 직장동료들에게 헤어지라는 충고를 듣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헤어진 후에도 정말 잘 했다고 격려 받았고요.

Q. 동거하던 시절에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 그땐 그냥 애인 외에 동성애자 친구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게이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요. 그래서 거의 만나는 친구가 없었지요. 물론 그와의 관계가 해소된 후 다른 동성애자 친구들을 만나면서 일반 친구들이나 직장동료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 반친구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관계 해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폭력 때문에 저는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 당하다가 어느 날 정말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든 후 단호히 집을 나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Q. 관계가 해소될 때를 대비한 경제적이라든가 현실적 대책은 있었습니까?

● 그냥 뛰쳐나와 결별을 선언했는데 그 남자는 옷 한 벌 안 줬어요. 옷가지는 몇 달 후에 일부분만 찾았죠. 물론 지금껏 집 얻을 때 들인 돈도 못 돌려받고 있지요. 그땐 돈이 없어서 방도 못 구하고 직장동료 집에 살았습니다.

Q.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달라졌을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 결혼은 복잡한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시간이 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성격상의 이유도 있고 또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이 겪는 결혼에 필요한 단계를 건너뛰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사람을 모르는 상태로 살기 시작하고 막상 살면서 힘든 점을 겪는 것도 많은 거 같습니다.

Q. 같이 사는 것이 혼자서 사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 성격상 혼자 사는 걸 못 견디는 편입니다. 외로움을 못 참거든요. 그러다보니 헤어지면 바로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사귀기보다 그냥 바로 사귀니까... 내가 동성애자기 때문은 아니고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였던 시기에는 미친 듯 일에 몰두하거나 방황하거나 등 안정하지 못했어요. 애인과 동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일도 잘 되고 안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동성애자의 경우 결혼이라는 구속력이 없어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커밍아웃을 한 커플의 경우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둘 사이의 관계를 아무도 모른다면 상관 없지만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 경우, 공인된 커플의 경우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나 시선 때문에 어느 정도 구속력이 생기니까요.

Q. 지금 사귀는 애인의 경우에는 그런 구속력이 있나요?

● 네. 관계 유지를 위해 주위에서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커밍아웃한 직장동료나 동성애자 친구들에게 일종의 감시를 받는다고나 할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싸울 것도 한 번 싸우게 되고... 주변의 눈을 의식하는 게 훨씬 좋고 더 잘되는 거 같아요. 가끔 다른 커플들과 만나는데 그런 관계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커플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장단점을 보면서 참고도 하고 서로 조언이나 충고도 해주거든요.

Q. 파트너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가족이라고 보지 않아서 즉 관계를 증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 앞서 말씀 드렸던 5년간 동거했던 남자와 헤어졌을 때의 경우겠죠.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헤어졌을 때 정당한 내 돈을 찾을 수 있었겠죠. 싸워서 받아낼 생각도 했었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나서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 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죠.

Q. 파트너와의 커플관계 즉 가족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없으니까 커밍아웃을 해서라도 주변의 시선으로라도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건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거겠죠. 지금은 문제가 생겨도 보호를 못 받으니까요. 사실 보호장치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만약 마음이 변해서 헤어진다면 그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원인, 가족관계 등으로 헤어지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커밍아웃을 안 한 경우에는 더 심하구요.

Q.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중 결혼권과 파트너십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결혼권이 꼭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혼권'은 이성애자들에게만 주어진 권리가기 때문에 권리보장측면에서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겠지요. 훗날 결혼은 이성애자

든 동성애자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는 보편적 인식이 생긴 후에는 결혼제도라는 제도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순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너희들은 결혼은 못하니까 파트너십 관계나 맺어.’ 라고 한다면 불평등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가족구성권 운동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만큼 했으니 이 성과를 갖고 파트너십이든 결혼권이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는 꾸준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동성애자도 가족을 구성하자고 외쳤다 정도면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항을 갖고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Q.** 이슈화가 되려면 결혼권을 주장하는 커플들이 가시화되어야 할텐데,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아웃팅의 문제겠죠. 친구사이 같은 단체 등에 아쉬운 부분도 아웃팅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직장에서도 커밍아웃해서 잘 지내고 가족들과의 문제도 없으니까 남들과 비교는 할 바가 아니겠죠. 남들이 나처럼 쉬운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웃팅 문제 때문에 조금 머뭇거린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런 건 더 과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3. 부모의 간섭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화로 결별한 이씨.** 이씨는 삼십대 초반의 자영업을 하는 남성동성애자이다. 5년반 정도 동거하던 파트너 한씨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불화로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다.

**Q.** 어떤 과정을 통해 (헤어진)파트너와 동거를 하게 되셨는지?

●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저로서는 한씨가 동성애자로서 맺은 파트너관계의 처음이었습니다. 만났을 때는 호감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제가 지방에 거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보는 사이였는데 3주 정도 흐른 후 한씨가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 두었다면서 내려와서는 안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을 배우겠다고 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제가 가게를 확장해야 할 형편이라 일할 사람도 필요했고, 같이 살던 친동생이 따로 나가게 되어 시기적 상황이 잘 맞았지요.

Q. 소득은 어떻게 관리 하셨나요? 가게의 명의라든가.

● 가게나 집등의 명의는 전부 제 이름으로 했어요. 일단 처음에 저의 부모님이 자본금을 대 주셔서 가게를 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한씨한테는 월급으로 처음엔 백만원 정도 주었고 2년 정도 지나 급여문제로 한번더 논의 후부터 이백만원으로 올렸고 헤어질 무렵에는 오백만원 정도까지 올려서 줬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관리했어요.

Q. 생활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분담 하셨나요?

● 한씨의 월급은 전부 한씨의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공동생활비나 한씨의 용돈까지 다 가게에서 버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다못해 담배 한 갑을 사더라도 가게돈으로 샀지요. 실제로는 저한테 월급을 받지만 가게의 다른 직원들한테는 동업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와 관련한 돈 관리는 다 제가 했고 생활비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Q. 가게일 외에 집에서 가사분담은 어떻게 하셨나요?

● 그는 집안일을 거의 안 했어요. 동성애자커플들이 모이는 동호회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른 커플분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사는 것 같더군요. 제가 보기엔 경제력을 담당하는 사람과 가사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사는 커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성애자 커플들 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동갑내기라서 그런지 그런 역할분담은 없었고, 친구랑 사는 듯한 느낌이 강했던 거 같아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음식과 설거지는 제가 하고 빨래와 애완견과 관련한 것은 한씨가 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사실 집에서 밥을 해먹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Q. 취미생활 등 일 이외에 함께 공유한 시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처음 몇 년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기 때문에 거의 사적인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가게 바로 앞에 극장이 있었는데도 5년 동안 한 번밖에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남자 둘이서 극장을 가거나 다니는 게 좀 어색하다고 할까 불편하게 느껴졌던 탓도 있었구요. 주로 집에서 같이 비디오를 보거나 했습니다.

그러다 한 3년 지나서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출근시간도 조정했습니다. 그 후엔 해외여행을 1년에 두 번 정도 다녔습니다. 그 즈음에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국내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Q. 같이 사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견해 차이나 다툼 등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 종종 다툼을 했습니다. 가사일을 왜 안하느냐는 등의 일들로도 가끔 다투었고, 또 한씨는 좀 사치하는 편이라 그런 걸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가게 운영문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외도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문제로 심각하게 싸우지는 않았어요. 바람 핀 사실도 몰랐으려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싸울 때는 동갑이라 좀 격하게 주먹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서도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 양보하면서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한 두 해 정도는 불화가 있으면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둘 중 한 명이 그냥 양보하는 걸로 해결을 봤죠

**Q. 커밍아웃은 하셨나요?**

● 친구들한테는 일부만 했고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직장동료의 경우 몇몇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커밍아웃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다는 한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알려진 겁니다.

한씨와 헬스클럽에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가 어느날 헬스클럽에서 머리가 아프다면서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갔더니 헤어지자는 쪽지를 남겨놓고 완전히 나간 거였습니다. 저도 답장을 썼는데 직장동료중 한 명이 와서 쪽지를 보고 알았고, 약간의 그런 소문이 있어서 알고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Q.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 처음에 같이 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제가 여동생과 같이 있었는데 군대 동기라고 소개 했지요. 워낙 갑작스러워서... 그렇게 말했고, 헤어질 때까지도 군대동기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가게를 확장하고 그래서 그냥 같이 동업하는 군대동기로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서로 어머니의 생일은 같이 챙겨주는 정도로는 했습니다. 각자 상대방의 집 안일에 신경을 쓰려고는 했지요. 예를 들어 제 여동생결혼식 뒤치다꺼리는 한씨가 다 맡아서 해주었더라고요.

약 4개월 가량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일을 돌볼 수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가 어머님과 함께 묵묵히 가게 직원들 통솔하며 잘 관리해주었어요. 헤어진 후에도 한씨는 제 어머님하고는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다름없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밍아웃을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집안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 어머님은 한씨의 월급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했고, 한씨의 어머님은 그에게 언제까지 남의 밑에 있을거냐면서, 저만 잘되고 넌 뛰냐면서 많이 다그치긴 같았습니다.

Q. 이웃 등 주변 분들과하고는 잘 지내셨나요?

●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웃 중에 한두 분이 농담조로 두 명에서 사귀냐고 하면 그냥 웃거나 '그래보여요'라고 되묻고 했죠. 이웃 상가 직원들이 관심을 주셔도 그냥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일반 친구들 중에서는 '재가 네 스타일이냐', '어디가 좋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가끔 술자리에서 안면을 튼 정도였습니다.

Q. 동성애자 친구분들과하고는 잘 지내셨나요?

● 한씨는 친구가 전혀 없었고, 전 좀 있었어요. 한씨는 저를 만나기 전 연애 경험이 있기도 했는데 동성애자 친구들을 별로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친구들을 만나는 걸 싫어했고 2년 정도는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믿음이 좀 쌓이고 난 후에는 제가 친구를 만나는 걸 막지는 않더군요. 가게가 안정되고 여유가 생긴 후부터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기도 했는데 한씨가 제 핸드폰 위치 추적같은 걸 하기도 했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지요. 헤어진 다음에 한동안은 같이 만나던 동성애자 친구들과의 교류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Q. 두 분이 같이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주로 미래의 불안이었죠 가게나 집이나 전부 저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한씨는 조금 불안해 했어요. 통장에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가게 확장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불안해했죠.

양쪽집안에서 서로 다그친 부분도 있었구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도 지쳐갔고, 한씨도 지쳤고... 결국 한씨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내 밥그릇만 챙긴다고 오해를 했던 탓에 떠난 것 같습니다. 후에 한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해주겠다고 달래봤지만 이미 늦었던군요.

마지막에 산 집의 명의를 그 친구이름으로 했으면 관계가 좀 더 오래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 완전한 커밍아웃을 안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의 이름으로 하기가 부담스

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이나 동생 명의 아니면 어머니 명의로 하곤 했는데 한씨는 많이 실망했겠죠. 헤어지면서 '네 가족의 욕심 때문에 지쳤다' 라고 그러더군요. 공동명의로 생각했지만 저의 집에선 왜 한씨의 이름으로 하나고 그러더라구요. 관계가 불안정해서 한씨는 자기는 여자와 결혼하고 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면 안 될까라고 물어오기도 했지요.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울고 불고 하면서 잡았지요.

지금은 누굴 만나더라고 동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적령기인 삼십대 초반의 남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기는 힘들겠지요. 제가 더 어리거나 집에서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주위의 시선이라든가, 둘 사이의 구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헤어지면서 한씨는 자기가 살 집의 월세 보증금과 자기 먹고살 적당한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주기로 합의를 했지요.

**Q.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나요?**

● 가게 확장하자.. 그리고 잘되게 하자. 이런 것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돈 번 것은 가게 확장에 재투자 했어요. 너무 먼 미래라 여겨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보험도 수혜자를 각자 부모님 앞으로 했고, 공동명의로 은행통장은 있었지만 그건 여행가기 위해서 만든 거라 일정금액을 넣기 보다는 그냥 번 돈을 넣은거죠.

한때 한씨가 하도 불안해해서 그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준 적도 있었지만 막상 만기되었을 때는 가게를 확장하는데 써버렸어요.

처음 동거할 시기엔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은 재산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농담 삼아 공증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도 했지요. 그래서 헤어진 다음에 재산을 주지말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간의 정도 있고, 재산의 절반가량 무리하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 친구는 10분의1도 안 가져 간다고 생각하겠죠.

**Q. 두 분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 그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적령기라는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이나 가족들때문에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도 했지요. 심지어는 각자 결혼하고 가끔씩 보는 그런 관계를 맺을까도 생각해 봤었죠

**Q.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그런 보호장치가 있다면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헤어지는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겠죠. 동성애자들을 위한 결혼이나

파트너십 혹은 가족제도가 있었다면 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Q. 입양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 아니요. 좀 더 나이가 들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요.

Q.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야겠지요. 요즘 나이 어린 친구들은 관계 맺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일시적 감정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 구성의 문제는 쉽게 결정내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해소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더 좋겠지요. 아무튼 다만 둘의 감정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1-2-4. 자식을 양육하는 마음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구분이 없다고 말하는

**정씨.**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십대 초반의 정씨는 부모님과 살며 본인의 아들 한 명을 양육하고 있다.

정씨는 한 때 파트너와 함께 부모님 및 아들이 있는 자신의 집에 이 년 간 동거했다.

Q. 어떤 계기로 파트너랑 같이 살게 되었는지?

- 그 친구는 지방출신이었고 서울에 와서 제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처음엔 고시원에서 지냈었죠. 힘들어 보여서 집에 몇 번 데려가곤 하다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Q. 같이 살던 시절에는 그 분도 주소를 이전하시든가 하셨나요?

- 주소지는 이전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우편물 같은 걸 받아야 하니까 이전했죠.

Q. 방 하나를 같이 쓰셨어요?

● 부모님방 하나, 아들방 하나, 그리고 그 친구랑 저랑 같이 한 방을 썼죠. 커밍아웃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들의 애인이라고는 생각 안하고 그냥 아들의 친한 동생이라고 해서 부를 때도 '막내야, 막내야'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Q. 커밍아웃은 안 한 상태입니까?

● 제가 게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고, 파트너 역시 그냥 일을 도와주는 동생으로만 알고 있었죠. 만약 집에서 안다면 호적에서 파일지도 모르지요.

진짜로 친한 일반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술 마시면서 애인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한테 쏘인트를 까였습니다. 삼년 전인데.. 지금도 그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그쪽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젊었을 때 여자들 사귀는 게 많았거든요. 결혼하고, 애도 낳은 후에 제가 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Q. 상대방 가족 역시 아들이 게이라는 걸 모르고 선배 집에 사는 정도로만 아셨나요?

● 네. 친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시면 같이 밥을 먹는 등의 일은 있었지만 애인이 아니라 선배라고 여기셨겠죠.

Q. 아들은 그러면 파트너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 삼촌이라고 했습니다.

Q. 가사일 분담 같은 건 특별히 하셨나요?

● 집안일은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저희가 할 필요가 없었고 그 친구는 바깥에서 내가 하는 일을 같이 도와줬죠. 집안일을 하거나 뭘 해먹을 땐 두 사람 중 아무나 덜 피곤한 사람이 먼저 했죠. 먹는 것도 더 배고픈 사람이 했고요. 집안 문제로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Q. 파트너와 둘이서 취미생활을 공유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 가족과 함께 살았고 또 일을 같이 했으니 그런 건 힘들었죠. 둘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가게 끝나고 나서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가끔 날 잡아서 같이 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한 정도지요.

Q. 같이 사셨을 때 파트너 역시 한 가족이라는 생각도 드셨나요?

● 시간이 흐르니까 애인이라는 것보단 식구라는 생각이 더 들었지요. 둘이서만 있는 거랑 또 식구들이랑 같이 있으며 사는 감정은 또 다릅니다. 만약에 둘이서만 있다면, 그땐 제약을 받는 부

분이 없으니까 더 편할 지도 모르지만, 가족관계 속에 있을 때는 서로 더 조심할 부분도 있고 서로 다투어야 할 때도 덜 다투게 되곤 했죠. 일반 부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덜 다투는 것처럼 말이죠.

Q. 아이와 셋이서만 사는 그림도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 당연히 그랬죠. 솔직한 심정이야 그렇게 살고 싶기도 했지만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니 까.

Q. 아들이 아빠가 게이고 같이 사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걸 이해해 줄 것 같습니까?

●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정체성의 부분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사회가 좀 더 개방이 되고 사람들의 인식도가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다르겠지만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가 자랄 때랑 달라서 언젠가 스스로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Q. 다른 이반친구들과의 관계는?

● 잘 지냈어요. 다들 애인으로 인정해 줬구요. 전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인이 밖에서 딴 짓을 할 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런 순간이 온다면 관계는 끝난 거라고 봐야죠. 사실 그 친구는 소극적인 편이라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게끔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Q. 둘 중 한 사람이 늦게 귀가하거나 하면 가족으로서 염려가 될 수는 있겠죠?

● 물론 한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술을 너무 먹지 않나 걱정은 되었겠죠. 의심하는 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서로 못 믿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Q. 같이 살아서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관계가 해소되었지만 그 시절을 떠올리신다면요?

● 기본적으로 잠자리나 데이트 하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등 기본적인 것이겠죠. 항상 같이 있는 게 좋았습니다.

Q. 불편했던 점은요?

● 글썄요... 그건 일단 집에서 가족들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 정도였겠죠.

Q. 여행을 갈 때는 두 분이서만 갔나요, 아님 가족들과 다 같이 가셨나요?

● 둘이서만 간 적이 많았고 온천 같은 곳엔 가족들과 다같이 가기도 했구요, 또 파트너가 아들만 데리고 어디 놀러가기도 하구요. 절 대신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준 것도 많았습니다.

Q. 두 분이서 같이 미래를 구상한 부분은 없었나요?

● 글썄요, 세월이 지난 후엔 둘이서 따로 나가서 집을 얻어서 산다는 막연한 생각은 했죠. 같이 살 때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보험 같은 건 다 각자 들었고요.

Q. 공동명의로 적금을 들거나 하진 않았구요?

● 카드를 하나 그 친구한테 줘서 쓰게 했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사람 다 흥청망청 쓰거나 하는 부분이 없고 검소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Q. 보험수혜자를 지정할 때 둘이서 상대방을 지정하는 부분도 없었습니까?

●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친구에게 보험을 하나 들어주긴 했는데 그건 자기 뭉기고...

Q. 지금은 관계가 해소된 상태인데 보험은 해약 안하셨어요?

● 헤어진 지 오래 되지도 않았고 제가 아직 넣어주고 있어요. 핸드폰도 제가 만들어준거라 요금은 제 통장에서 나가는 거고, 지금도 연락은 가끔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같이 일하면서도 따로 월급을 주진 않았거든요. 같이 쓰고 같이 사곤 했으니까. 보험이나 핸드폰 요금은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그만두겠죠.

Q. 그럼 아직 재결합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헤어진 이유를 여쭙봐도 될지요?

● 재결합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대수롭지 않은 말다툼이 빌미가 되어 헤어졌습니다.

Q.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셨다는데,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 등의 제도적 장치로 보호받고 있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을까요?

● 누구나 이반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성애자부부들의 경우엔 서류상의 끈이 있으니까. 근데 이반들의 경우엔 십년을 살든 이십년을 살든 헤어지면 바로 남이 되지요. 결혼이나 파트너십 제도가 없으니까 쉽게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Q. 아들이나 부모님이 파트너를 보고 싶어하진 않아요?

● 아들은 가끔 그래요. 삼촌은 왜 안 들어와요 라는 식으로... 가족들에겐 그냥 지방에 일자리 얻어서 간다고 했으니깐... 그 친구가 가끔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챙겨주기도 해요.

Q. 만약 추후라도 동성애자의 결혼권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고 권리가 보장된다면 등록하실 의향은요?

● 찬성은 하지만 제가 직접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웃팅 때문에, 가정이라는 테두리 때문이죠.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일반 사회의 편견이 없어진 후라면 할 수 있겠지요.

Q. 아빠가 동성애자라서 아들에 대해 갖는 특별한 생각, 혹은 양육시 남다른 점은 있습니까?

● 아들에게 자꾸 여자 친구가 있냐 묻곤 해요. 혹시 이 녀석도 커서 동성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동성애자를 위한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흔적이 남거나 아들이 볼까봐 컴퓨터 앞에 앉지도 않게 되요. 저야 이렇게 살지만 자식만큼은 안 그러길 바랍니다. 힘들게 살아야 하니까요.

Q. 만약 아들이 게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도 다른 이성애자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Q. 게이라서 다른 이성애자부모에 비해 더 못해주는 부분, 혹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 밤에 일을 하는 이유로 일단 애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애가 자라면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시간이 많아지더군요.

Q. 외국의 통계를 보면 동성애자부모의 자식은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란다는데요?

● 커밍아웃을 한 부모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성애자와 똑같이 행동하니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에 아이 학교 가는 건 챙겨주고,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나오기 전에 얼굴 보는 것... 하루에 두 번씩 아이 얼굴 보는 건 지키려고 합니다. 또 술을 먹었을 때 술 깨고 나서 들어가지 술 취한 상태로는 안 들어갑니다.

Q. 본인은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동성애자의 경우 입장을 원하거나 자식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 내가 만약 결혼하기 전에 성정체성을 깨달았으면 결혼을 안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애를 갖고 싶어 하는 동성애자도 있죠. 하지만 자식에 얽매이고 규제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게이커플들에게는 둘이서 일단 잘 살아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둘이서는 애를 잘 키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키우다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거든요. 게다가 동성애자의 경우 둘이 끝까지 잘 가면 모르지만 헤어지게 되면 애는 어떻게 되나요?

Q. 만약에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결혼제도 같은 것이 생기면 아이에 대한 친권이 보장되고 헤어진 후에도 양육권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아직까지 유교사상의 영향이 크고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선 힘들겠죠. 이십년 정도는 더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동성애자들의 가족구성권운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혹은 요구사항은요?

● 하나하나 들춰낼 건 들춰내고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걸음마 단계 정도니까요. 점점 더 나아지겠지요. 사회도 개방적으로 변하고 이슈도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퀴어퍼레이드를 하는 걸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봐도 요즘엔 흔히 동성애자들도 등장하곤 하니까 나아지겠죠.

동성애자들이 파트너를 사귄 때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오래토록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5.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가족을 꾸릴 수 있다고 말하는 김씨와 박씨 가족.** 서울에서 2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김씨(39세)와 박씨(38세)의 인터뷰내용이다. 이들은 애인(파트너) 사이가 아닌 오랜 친구 사이이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공동생활을 꾸리고 있다.

Q. 처음에 어떤 연유로 만나서 같이 살게 되셨는지?

● 박 : 8년쯤 전에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안에서 활동하며 처음 만나서 마음 맞는 친구로 지

내던 사이였고, 작년 초 두 사람 모두 개인적 사정상 하우스메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 김 : 박과 살기 전에 다른 룸메이트랑 살았지만 서로 잘 맞지 않는 상황이었고, 박과는 오래 전부터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Q. 지금 두 분이서 살고 있는 집을 얻을 때는 명의는 어떻게 또한 주소지는 어떻게?

● 박 : 전세금은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명의는 일단 제 명의로 했고 세대주 역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생활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부담하시는지요? 커플도 아니고 친구관계이신데?

● 박 : 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네것 내것 크게 가리진 않습니다.

● 김 : 박이 조금 더 쓰는 것 같아요. (웃음)

● 박 : 제가 더 쓴다고는 하지만 별이가 제가 조금 더 나은 편이라 불만은 전혀 없고 둘 다 검소한 편이라 별로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Q. 가사노동은 어떤 식으로 부담하십니까?

● 박 : 정확하게 청소는 누구, 빨래는 누구 이런 식으로 나누진 않습니다. 그렇게 시도해봤는데 오히려 불만이 생기고 별로 효과는 없었어요. 지금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김에게는 좀 미안해하고 있죠.

● 김 : 집안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혼자 살 때랑 비교해서 더 힘들지는 않아요. 제가 원래 아주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 박 : 저는 사실 김에 비해서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김이 게으르거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불만은 없어요.

Q. 서로 돈 관리도 각자 하시나요?

● 김, 박 : 네. 애인 사이도 아니고 수입이나 지출이 각자 다르고 하니까요.

Q. 집안에서의 생활이나 취미, 식사 등 공유하시는 시간은 많으신가요?

● 김 : 굳이 집안이 아니더라도 게이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많았죠. 수영도 같이 다니고, 술도 같이 마실 때가 많고 그렇죠.

● 박 : 집안에서라면 함께 사는 사람들끼린 밥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에 있을 때 가급적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지요. 밖에 있을 때도 뭐 좋은 걸 보거나 하면 김을 생각하게 되고, 영화를 본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도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또 챙겨주게 되더군요. 또 직장생활하면서 겪은 개인적인 일들을 집에 오면 이야기하곤 하죠. 이성애자 가족들이 저녁시간에 귀가하면 그런 것 처럼요.

Q. 성격이나 취미나 등등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 박 : 김은 말수가 적은 편이라 불만 있는지 몰라요.(웃음)
- 김 : 안 맞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원래가 같이 잘 다니고 취미도 공유하던 친구였으니까요.
- 박 : 예전부터 잘 알았던 사람이고 같이 살 하우스메이트로서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같이 사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 없었던 거 같아요. 조그만 불만이야 있을 수 있겠죠.
- 김 : 박이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속으로 애가 오늘 또 늦네. 술 많이 먹고 다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은 되지요.

Q. 커플이 아닌데도 그러세요?

- 박 : 네. 주로 제가 늦게 귀가하지만 어쩌다 집에 일찍 왔을 때 김이 없으면 어쩐지 허전하기도 하고 '왜 없지. 어디 간 거야?' 하고 찾게 됩니다.

Q. 커밍아웃 여부는요?

- 김 : 직장에는 안 했고 가족들에게는 했죠. 일반 친구들한테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전 고향도 지방이고 지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일반친구들은 자주 못 만나거든요. 일년에 한번 정도 연락하는 정도의 사이인데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Q. 부모님들은 하우스메이트가 있는 걸 아나요?

- 김 :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누구랑 사는지는 모르죠.
- 박 : 저희 집에선 알고 있습니다.

Q. 시골에 있는 혈연가족 분들이 지금 사는 집에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 김 : 가족들이 사실 잘 방문하진 않아요. 가족들이 동성애자인 나를 대하는 건 그래도 아들이

고 동생이고 해서 부담이 없겠지만 다른 동성애자를 보는 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친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커밍아웃했던 일반친구가 서울에 온 적 있었는데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거절하더군요.

Q. 부모님은 두 사람의 동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혼자 사는 것과 비교해서?

- 김 : 박이랑 살기 전에 다른 친구랑 몇 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랑 조카랑 한 번 왔다가 적이 있었죠. 그런데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 박 : 저희 부모님은 김이랑 사는 걸 보고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신 듯 해요. 커밍아웃한 이후 아들이 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지금도 그런 편인데, 김을 한번 만나고나서 저에 대한 걱정이 좀 누그러들었던 거 같습니다.

Q. 두 사람 중 누군가가 가족이나 친척을 데려오거나 소개한다면 어떻게 대하실 거 같아요?

- 박 : 그냥 내 친척 내 조카, 이모 고모 대하듯 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당연한 거죠. 다만 저희 집에선 제가 게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고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나 김이 부담을 느낄 만한 일을 벌이실까, 괴롭히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고 김에겐 미안한 점도 있지요. 이건 우리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Q. 직장에서는? 왜 혼자 사냐고, 누구랑 사냐고 묻지 않아요?

- 김 : 옛날 직장에선 직장동료들한테도 커밍아웃을 했었는데 지금 직장에선 일일이 이야기하기 귀찮아서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있다는 정도로만 대답해요.
- 박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Q. 사는 동네에서는요?

- 박 :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진 않겠죠. 우리 동네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도 짧고 이웃집 일에 관심 없잖아요? 하든 안하든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Q. 다른 이반 친구들과의 관계는요?

- 김, 박 : 친구들이 대부분 겹치니까 다들 잘 지내죠.

Q. 2년간 사셨는데 살기 전과 살고난 후의 장단점은요?

- 박 : 외롭지 않아서 좋지요.
- 김 :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서로 모르는 상태이고 공유하는 부분이 없었던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면 어려운 점에 부딪혔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서로 힘이 많이 됩니다.

Q. 친한 친구사이니까 서로의 인생에 대해 참견하지는 않나요?

- 박 : 글썄요. 김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인지 저한테 그런 간섭은 안하더군요. 제 경우에도 실제로 잘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연애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김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분이 마음에 들거든요. 만약 마음에 안 들었다면 조심스럽게 말했겠죠. 그밖에 살면서 힘든 부분은 상의를 하구요. 도움도 받습니다.

Q. 앞으로 계속 살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 꿈이나 서로 공통으로 그리는 꿈은 있나요?

- 박 : 애인사이가 아니니까 딱히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혈연가족의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결혼하거나 분가해서 따로 살더라도 여전히 형제이듯이 제 경우 만약 지금의 동거관계가 깨어지고 따로 살게 되더라도 여전히 가족처럼 여겨질 것 같습니다. 일반 친구들이 잠시 필요에 의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살다가 마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 김 : 막연하게나마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곁에 있을 것 같은 사이라 생각합니다. 커플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공유는 건 없겠지만 정신적인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요.
- 박 : 사실 이웃에 다른 게이 친구들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밀반찬도 나눠먹고 특별한 일 없이도 진짜 가족들처럼 한번씩 들여다보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긴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웃으로 살자. 게이실버타운을 만들어 살자 는 등의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 정도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일 수 있겠지요.

Q. 커플이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사는 공동체, 친구 사이를 제도적으로 엮어주는 장치가 필요할까요?

- 김 : 그런 제도가 생기면 실제로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 박 :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만약에 지금 김을 가족으로 등록시켰다가 애인이 생긴 후에 그 애인 역시 가족관계로 포함시키고 싶을 경우, 꽤 복잡해지겠죠. 아무튼 김과 저의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생활공동체인 비혈연가족” 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지금 상황에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논의가 결혼이나 파트너십 관계 이상까진 나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 박 : 그런데 죽을 때가 되어서 애인보다 함께 산 친구가 내 인생에선 더 소중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내가 유산이 있고 그걸 친구에게 상속해주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제도가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보험수혜자를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Q. 동성애자의 입장에서 보험수혜자를 누구한테 주어야 할까요?

● 박 :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떠나서 남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들은 수혜자는 직계 혈연가족으로 강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연금보험과 손해보험을 가입하며 알아봤었는데 일부를 제외하곤 다 혈연 가족한테로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더군요. 심지어는 사회단체에 돌아가는 것도 제한되어 있더군요.

Q. 동성애자 입장에서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박 :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동성애자 커플이나 독신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입양권이 보장되어야겠지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양육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일과는 다른 거잖아요. 소유욕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다며 쉽게 말하는 이들을 아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개를 키우라고 말하곤 해요.

Q. 파트너십이나 결혼권이 인정된다면 등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 :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부분들 즉 보험이나 수당 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많은 상황에서 아웃팅을 감안해야 하니까요. 여건이 된다면 한번 부딪쳐보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 박 : 개인적 기호에 무관하게 제도가 밀받침된다면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이나 반대세력에 공격을 받는다는 손 치더라도 법이라는 보호받을 구석이 있게 된다는 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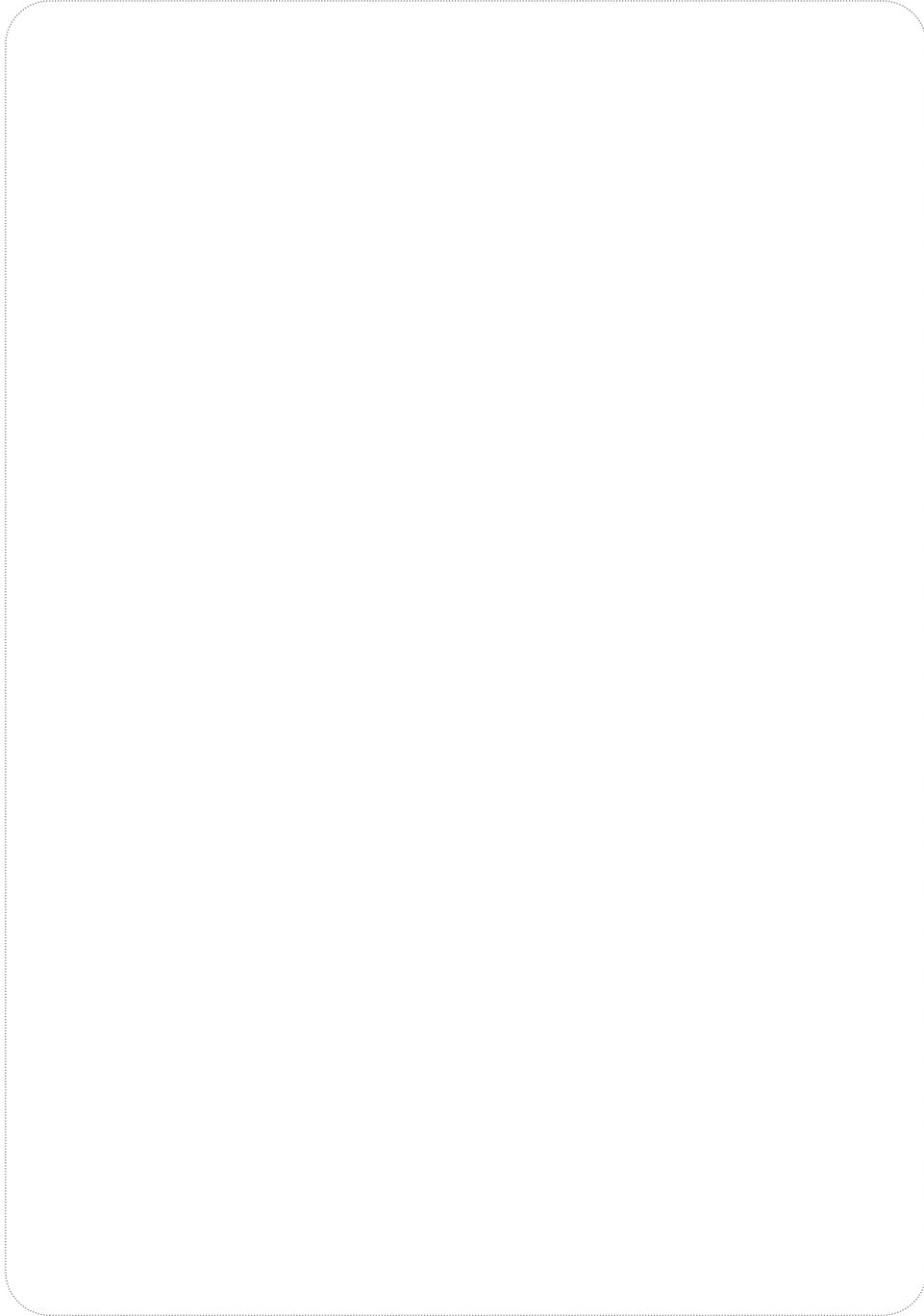
Q.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망이나 에 바라는 말이 있다면?

● 김 : 올해의 개괄적인 성과물을 바탕으로 내년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해요.

● 박 : 무엇보다 게이커뮤니티 내에서 동성애자커플들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합니다. 사실 가족구성권 문제는 눈에 드러나지 않아 힘든 것 같습니다. 관계된 법적 사례도 많지 않은 거 같고요. 또한 동성애자들 중에서 가족구성권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이들이 있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웃팅 문제가 걸리기 때문인지... 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MEMO

---





## 1-3. 각종 차별 실태 정리 및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처 방법

**1-3-1. 의료결정권.** 현재 동성 배우자 또는 동성애자 가족은 입원과 수술 여부의 동의, 치료 과정에 대한 결정, 면회 자격, 사망 확인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보호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 사례:

- 내 파트너는 내가 수술을 하고 입원 했을 때 간호를 해 주고 보살펴 주는 실질적인 보호자이며 가족이다. 그런데 동성 파트너는 이러한 때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의 수술은 경미한 것이어서 다행이었지만, 긴급사고 큰 일이 있을 때, 또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가 제도적으로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발표자1 - 천정남씨)

- 아까 천정남 씨가 이야기했던 병원에서의 일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당했다. 항상 처리가 늦어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발표자2 - 김명우씨)

- 작년 초에 내 파트너가 갑작스레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동의서를 쓰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가족 이상의 사이라고 말을 해도 들은 친구 사이이고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뜻을 박았다. 100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내면 입원 동의서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어쩔 수 없이 친한 게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그가 남편인 것처럼 말을 해서 입원을 할 수 있었던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 파트너는 여기 있는데 게이가 와서 사인을 했었던 것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1부 -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1장)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 "스피크 아웃"' 및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 사례 정리'에서 발췌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여성학자 조주은씨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의 서명과 날인을 둘러싼 정치>라는 글에서 '환자가 수술을 해야 할 경우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보호자를 부르는데 "자신이 보호자이다."라고 말하면 병원 측에서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글에서는 '이대부속 동대문 병원의 간호사는 보호자의 자격요건을 묻는 질문에 관하여 "19세 이상인 직계가족이어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직계가족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느냐의 질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라고 전했다. 긴급한 상황을 요하는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에 대한 보호자 자격의 확인 절차가 없다면 이를 이용해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겠으나, 병원 측이 인정하는 19세 이상의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며 환자 보호자로서 당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

**1-3-2. 재산권.** 파트너의 사망에 따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성간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할 시 재산의 50%는 부인에게 상속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억원 미만의 재산이 상속될 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결별이 아니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 예전에 15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있었다. 헤어졌을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 이성 부부가 이혼했을 때처럼 재산 분할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해서 경제력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제도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도 재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발표자 2 - 김명우씨].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1부 -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1)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 "스피크아웃"' 및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 사례 정리'에서 발췌

**Q.** 관계가 해소될 때를 대비한 경제적이라든가 현실적 대책은 있었습니까?

**A.** 그냥 뛰쳐나와 결별을 선언했는데 그 남자는 옷 한 벌 안 줬어요. 옷가지는 몇 달 후에 일부분만 찾았죠. 물론 지금껏 집을 얻을 때 들인 돈도 못 돌려받고 있지요. 그땐 돈이 없어서 방도 못

구하고 직장동료 집에 살았습니다. [커밍아웃을 기반으로 결혼권을 거쳐 파트너십까지 단계적 가족구성권을 꿈꾸는 조씨].

**Q.** 두 분이 같이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A.** 주로 미래의 불안이었죠. 가게나 집이나 전부 저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한씨는 조금 불안해 했어요. 통장에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가게 확장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불안해했죠. ... (중략) ... . 마지막에 산 집의 명의를 그 친구이름으로 했으면 관계가 좀 더 오래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간섭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화로 결별한 이씨].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1부 -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2) 동성애자로서 구성된 가족 심층 인터뷰 정리에서 발췌

동성애자 커플은 동거 관계를 시작한 시기 그리고 관계 해소 후 시기에 재산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관계를 시작한 시기에 공동재산을 공동명의로 설정한 이후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관계해소 이후에도 충분한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동성애자 커플이 사망 후에 사망자가 동성 파트너를 상속자로 지정하였다하더라도, 현행 민법 체계에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상속 우선순위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상속포기각서를 받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힘들다.

### 1-3-3. 사회보장/연금/보험수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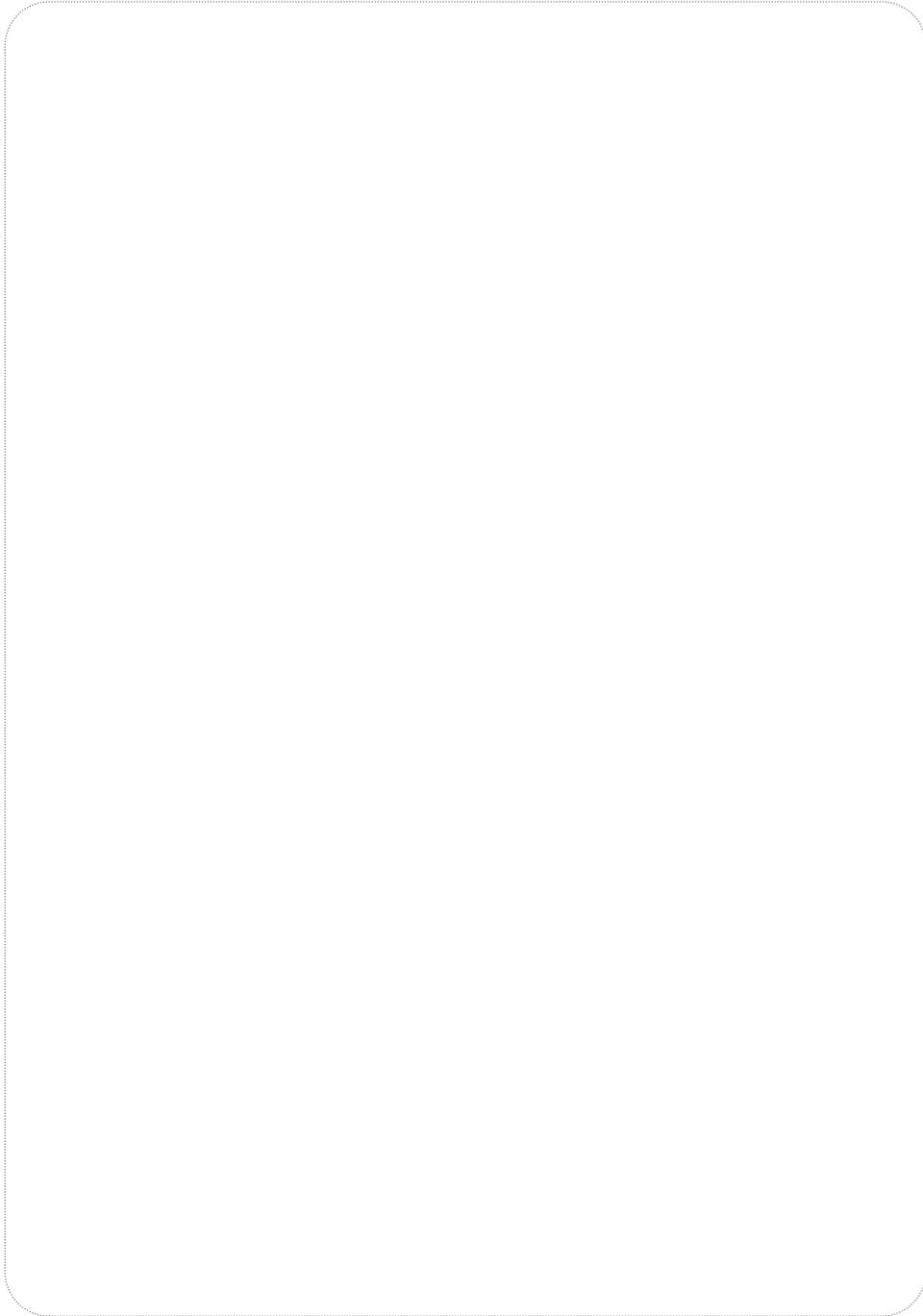
의료보험, 각종 민간 연금 및 보험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국민연금의 상속, 가족수당의 수취, 경조사 부조 및 휴가 신청 등이 불가능하다. 동성 커플 허여씨는 직장에서의 배우자 수당 월 3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배우자는 따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결혼 휴가, 배우자 부모형제의 장례, 환갑 등의 경조사 휴가를 받지 못했고, 배우자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가족간병휴가도 얻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1500만 원가량 금액을 납입한 본인이 사망한다 해도 동성 배우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결혼 전에 가입했던

각종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혼 이후에는 이것을 일일이 친구 관계로서 파트너로 새로 지정해야했다. 보험의 부부한정 특약도 이용할 수 없었다. 많은 불이익과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발표자 7 - 허여씨]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1부 -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1)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 "스피크 아웃"' 및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 사례 정리'에서 발췌

MEMO

---





## 제 2 부

#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법률적 접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법률적 접근”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동성애자 가족구성과 관련한 한국의 법적 현실로서 혼인이나 가족에 관한 헌법의 해석 및 현행 민법의 규정,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로는 해외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제도적 현황을 총괄하여 정리한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2-1. 동성혼과 가족제도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1. 들어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동성혼이 법률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은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에 포함시키는 방식과, 혼인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등은 동성혼을 이성혼과 동일한 '혼인'으로 보는 법률을 제정하여 수용하였고, 프랑스나 미국의 하와이, 버몬트 주 등은 동성혼을 이성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합'으로 보는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적으로 수용하였다. 이하에서는 동성혼을 새로운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한 프랑스의 경험, 동성혼을 혼인으로 포함시킨 캐나다의 경험과 현재 각 주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의 법률적 수용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 2.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 (1) 근현대의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교육과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근대적 가족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의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은 '혼인과 혈연을 매개로 구성되는 혈연공동체'를 의미했다. 그런데 이성혼을 바탕으로 하고, 출산에 의하여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 즉 혈연공동체가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각국이 근대적인 민법을 통해서 친생자와 입양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즉, 가족제도의 전통적인 기능이

던 '출산'과 '양육'이 '출산' 또는 '입양'과 '양육'으로 변화한 것이다. 나아가 출산이나 양육을 하지 않는 '무자녀 가족공동체'도 역시 가족으로 보호되고 있는 오늘날 가족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양육을 절대적인 기능으로 전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제 가족은 혈연공동체에서 '애정에 기초한 돌봄과 협력의 공동체'로 그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 (2) 동성혼의 수용

애정에 기초한 공동체로서, 돌봄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때로는 입양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동성혼 가족'이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현재의 가족의 개념에 동성혼 가족은 편입되지 못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동성혼 가족'과 '이성혼 가족'은 차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에 각국에서는 동성혼 가족을 법률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동성혼 가족을 가족제도로 수용하는 태도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성혼과 동등하게 수용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사회적 결합'의 하나로 이성혼과 다르게 보는 태도이고, 마지막으로 이를 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이다.

### (3) 각각의 논거

동성혼을 이성혼과 동일하게 결혼과 가족제도로 수용해야 한다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그 논거로 한다. 첫째, 현재 가족제도는 더 이상 혈연에 기초한 가족의 개념으로 국한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족제도는 개인들이 애정에 기초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더 이상 출산을 가족의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입양을 통해 구성되는 동성혼 가족은 출산 또는 입양에 의해 구성되는 이성혼 가족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둘째, 무자녀 가정의 존재는 가족이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및 교육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성혼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성혼과 비교하여 차별받을 근거가 없다. 셋째, 동성혼과 이성혼의 차별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것이다.

한편 동성혼을 이성혼과 다른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사회적으로 '혼인'의 개념은 과거로부터 이성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성혼에 대해서만 혼인으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 3. 각국의 사례

#### (1) 프랑스의 경험<sup>1)</sup>

##### (가)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 도입 전

1997년에 최고민사법원(the Highest Civil Court)은 보통법상의 결혼(cohabitation, common law marriage)은 동성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은 법률적으로 동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Velela v. Weil, 1997. 12. 17.). 이보다 전에 나온 판결 중에는 남성 동거인은 다른 남성 동거인의 항공티켓의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동성혼 가족을 이성혼 가족과 차별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Secher v. Air France, 1989. 7. 11.). PaCS의 도입 전까지 프랑스의 법원은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 (나) PaCS의 도입 배경과 도입 당시의 찬반

이처럼 법원에서 계속해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1999년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동성혼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법원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선택된 우회적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미 덴마크에서도 10년 전에 도입되었던 새로운 형태의 관계(relation)가 1999년에 PaCS로 도입된 것이다.

PaCS는 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혼인하지 않은 공동체(non-marital union)에 결혼(civil marriage)과 동거(concubinage)의 중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혼인과 유사한 보호가 주어지되 결혼에 비해서는 해소하기도 쉽고, 법적인 보호가 약한 것으로 도입되었다. PaCS가 도입될 때, 프랑스의 우파 세력들은 반대를 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들 중에서는 PaCS의 도입을 반대하는 대중시위를 시작한 그룹도 있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냉담하자 중단하였다고 한다.

##### (다) PaCS와 혼인의 비교

PaCS는 생활-주거와 성관계-을 같이 하겠다는 성인간의 계약이다. PaCS의 당사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결혼상태이거나 PaCS의 일방 당사자인 상태이

1)이 항의 내용은 Wikipedia 의 'Same sex marriage in France' ([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 를 참조했습니다.

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3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이어서는 안 된다. PaCS 결합은 지방법원의 등기관 앞에서 선언되어야 한다. PaCS의 파트너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고, 양인 중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PaCS의 파트너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과, 상대방 파트너의 아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친권을 갖는 것은 금지된다. PaCS의 파트너들은 상대방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다. 외국인의 경우 혼인의 경우에는 즉시 영주권이 허용되나 PaCS의 경우에는 1년 이후인 자에 대해서 재량에 의해서 허용된다. PaCS는 3년 후부터 혼인중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통합 과세(joint income taxes)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sup>2)</sup>. 부유세(Wealth tax; impôt sur la fortune)도 PaCS가 도입된 1999년부터 통합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PaCS는 혼인보다 형식이나 그 해소가 자유롭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해소는 이혼보다 쉬워서 일방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된다.

#### (라) PaCS에 대한 비판과 2004년의 동성혼인과 논란

PaCS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고, 많은 이들이 PaCS로 등록을 하였다. PaCS의 시행 후 200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PaCS는 70%의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1999년부터 시행 후 5년 동안 144,225 PaCS가 등록했고, 17,624 PaCS가 해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PaCS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부터 동성혼에 대해서 이성혼과 동등한 효력을 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이성혼에 비해서 열악한 법적 지위를 보장할 뿐인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2004년 3월 17일 Didier Erignon, Jacques Derrida, Aleain Touraine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혼인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면서 '법원은 온타리오나 브리티시 콜롬비아, 메사추세츠의 선례를 따라 동성혼을 인정하고, 의회는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같은 법을 제정하여 동성혼을 허용하고 이성혼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5일 전 녹색당 당수후보였던 보르도 시장 Noel Memere는 Bertrand Chaptentier와 Stephane Chapin의 동성혼을 주재하였다. Memere는 프랑스 법상 동성간의 혼인을 금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성혼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럽인권재판소(Europe Humanrights Court)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프랑스의 우익 세력들은 동성혼을 막기 위해 PaCS에 대해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4년 7월 27일 보르도 법원은 Bertrand Chaptentier와 Stephane Chapin의 결혼은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프랑스 민법전에 '남편과 부인'(a husband and a wife)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은 동

<sup>2)</sup>대부분의 경우 소득세 통합 과세를 하면 분리 과세를 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출산과 양육이 가정의 기초이므로, 이런 결혼의 본질적인 기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2005년 4월 9일 보르도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했고, Charpentier와 Chapin은 이 판결에 대해 차별을 근거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 법원의 판단은 프랑스 법제도의 동성혼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동성혼 인정을 위한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논의는 PaCS에 부여되는 권리를 확장하는 것과 동성혼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제를 마련하는 것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PaCS에 반대하던 우파에서조차 PaCS의 시행 후 현재는 PaCS를 지지하고, PaCS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확장하는데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도 그런 내용으로 PaCS의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성 소수자 운동그룹들은 동성 결혼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자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한편 사회당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당의 경우 Francois Hollande는 동성혼 인정법에 찬성하며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Segolene Royal, Lionel Jospin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였고(나중에 Segolene Royal은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의 불일치로 사회당은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2) 캐나다의 사례<sup>3)</sup>

위와 같은 프랑스의 사례와 달리 캐나다는 법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의 헌법의 역할을 하는 권리장전에 반한다는 판결을 여러 주와 연방 대법원에서 내림으로써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가) 캐나다 법원의 기존의 입장

애초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법원은 혼인의 요건으로 '이성'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동성혼을 배제하고 있는 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법원은 혼인의 요건으로 다른 성일 것을 요구하

3) 이 항의 내용은 Wikipedia의 Same-sex Marriage in Canada([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 를 참조했습니다.

는 것은 캐나다 권리장전(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제한은 자유와 민주 사회에서 정당성을 갖는 정당한 제한이라고 하였다. 온타리오의 지방법원도 1993년에 결혼의 요건으로 다른 성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결혼의 정의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인데, 헌법상의 평등조항도 이런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하였다.

#### (나) 동성혼의 인정과정

1999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동성커플에게 결혼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많은 재정적 법률적 혜택을 동성커플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sup>4)</sup>. 그러나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으로 인정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경제적, 법률적 혜택을 규율하고 있는 법들이 대부분 연방보다는 지방의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동성혼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주마다 달랐다.

그러다가 2002년 온타리오의 지방법원에서는 혼인의 요건으로 다른 성(sex)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장전 상의 평등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와 함께 의회로 하여금 2년 이내에 이 조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만약 의회가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혼인의 정의조항은 자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오늘날 결혼의 목적은 약속을 지키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보호, 일의 분담, 주거 공동, 정서적·재정적 상호지원, 자녀 양육 등을 지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동성혼이나 이성혼에서나 동일하다고 보았다. 동성혼과 이성혼의 유일한 차이점은 출산인데, 오늘날 결혼한 부부가 모두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며, 많은 아이들이 혼인 외에서 출생하고 있으므로, 출산이라는 것이 혼인의 요건으로 '다른 성일 것'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의회에 법을 고칠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동성혼에도 혼인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sup>5)</sup>. 이 판결 이후 토론토 시는 동성혼을 혼인으로 등록해 주는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퀘백의 고등법원도 온타리오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판결을 했다<sup>6)</sup>. 2003년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도 동성혼을 혼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sup>7)</sup>. 이 판결에서는 네덜란드의 법과 달리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아서 많은 미국인들이 동성혼을 위해서 캐나다로 왔다고 한다.

4) M. v. H. [1999] 2 S.C.R. 3.

5) Halpern et. al. v. Canada (Ontario Superior Court, 2002, 7, 12)

6) Hendricks v. Quebec (Quebec Superior Court, 2002, 9, 6.)

7) Barbeau v. British Columbia 2003 BCCA 251 (Court of Appeal for BC, 2003, 5, 1.)

## (다) 다수의 주의 동성혼 합법화

2003년 이후로 캐나다의 10개 주 중에서 8개 주에서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sup>8)</sup>. 그래서 동성혼이 이미 캐나다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주에서 혼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미 그 지역에서 3000쌍의 동성혼이 있었다.

## (라) 혼인법의 제정

이처럼 대다수의 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지만, 주마다 결혼에 대한 법률과 해석이 달라서 통일적인 법률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캐나다 정부는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 나갔다. 여론수렴과 논의의 결과 캐나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요한 논거로 동성혼을 혼인과 같이 보는 혼인법(Civil Marriage Act ; 법 C-38, 시행일 2005. 7. 5.)을 제정·통과하였다.

첫째, 1999년부터 이미 결혼에 부수되는 중요한 혜택들이 동성혼에 부여되고 있었고 90%의 캐나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둘째,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캐나다의 권리장전에 부합한다.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결합으로 보고 혼인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권리장전상의 차별 금지에 부합한다. 혼인법의 제정시에 보수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자유당의 일부에서도 반대를 했다. 자유당과 신자유당, 퀘벡 블록에서는 대부분 찬성을 했다.

## (3) 미국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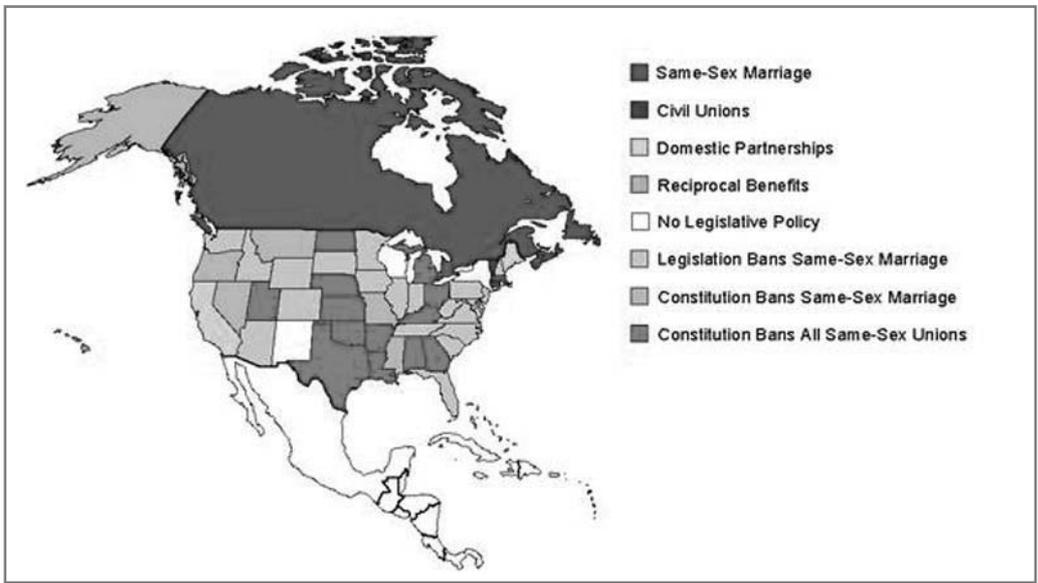
미국에서도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1971년 최초의 소송이 제기된 이래 많은 소송이 있었다. 1971년의 최초의 소송 이래 동성혼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계속해서 내려졌으나, 1993년에 최초로 하와이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성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알래스카에서도 1998의 판결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메사추세츠주에서는 2003년 11월 8일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사건에서 동성커플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8) 동성혼이 합법화된 주와 특별구: Ontario; British Columbia, Quebec, Yukon territory, Manitoba, Nova Scotia, Saskatchewan, Newfoundland, Labrador, New Brunswick

주헌법에 반한다고 선고했다.

메사추세츠 주는 이 판결 이후로 2004년 5월 17일 부터 동성 커플 결혼을 허용해 왔다. 한편 메사추세츠의 판결이 내려진 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였다. 동성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그 후 2004년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미국의 각 주의 현황] Wikipedia : Same-sex marriage in USA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시장 Gavin Newsom은 부시의 발언을 비판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샌프란시스코는 동성혼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폭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5년 2월 12일 Del Martin 과 Phyllis Lyon의 최초의 동성혼 결혼식이 있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혼인 허가장의 발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동성혼을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은 California, Connecticut, Florida, New Jersey, New York, Oregon, Washington 등에서 진행중이다.

한편 2004과 2005에 13개 주가 결혼은 이성의 결합이라고 주헌법을 수정했다. 13개 주는 Arkansas, Georgia, Kentucky, Louisiana,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Texas이다.

## 4. 우리나라의 동성혼의 법률적 수용현황

### (1) 헌법의 가족제도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 혼인을 할 자유, 가족을 형성할 자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제를 검토하면서 혼인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내지13)

우리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결혼과 가족의 성립과 존속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제 36조 제1항). 이 기본원칙은 결혼과 가족제도의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할 내용이며,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결혼과 가족제도는 위헌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헌법 제 36조 제1항의 의미를 밝힌바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바82)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적을 부계혈족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했던 국적법의 조항이 양성의 평등에 입각하여 가족이 성립하고 존속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sup>9)</sup>.

9)"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7). 이 규정은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될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입법자가 가족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법조항이 규율하는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배우자의 한쪽이 한국인 부인 경우와 한국인 모인 경우 사이에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모두 그 자녀는 한국의 법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고 공동체에서 흠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동등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족의 국적을 가부(家父)에만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족의 장(長) 또는 중심을 부로 정하는 것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명분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적취득에서 혈통주의는 사회적 단위인 가족에로의 귀속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국가공동체로의 귀속을 담보하며 부모와 자녀간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있는 기분이 된다. 만약 이러한 연관관계를 부와 자녀 관계에서만 인정하고 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폄하(貶下)하고 모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법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 외에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어긋나는 결혼과 가족제도의 요소가 있다면 역시 위헌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 (2)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을 보장하고 있고, 혼인과 가족제도와 관련해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 규정 하에서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캐나다와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도 있다<sup>10)</sup>. 이는 가족제도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가족제도를 이성혼으로만 국한할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 애정에 기초한 동성간의 공동체로서 입양을 통한 양육으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교육은 얼마든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동성혼을 이성혼과 구별하여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이며, 이는 헌법의 지도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가족제도는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기초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헌법 제36조 제1항 중에 포함된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들어서 헌법이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조항을 이성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체계적 문제가 있다. 첫째, 이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존재할 수 있는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들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들을 배격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해야지, 혼인의 전제가 양성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상 자연스럽지 않다. 둘째, 조문의 구조상으로도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입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혼인'과 '가족' 모두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혼인'과 마찬가지로 '가족'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족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는 '입양'의 경우, 어느 누구도 입양의 조건으로 양성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양성일 것이 성립의 기초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결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의 기초인데, 이것은 양성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

10) 프랑스에서는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보았는데,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위헌으로 보았다.

이 아니라, 동성(同性)과 이성(異性)을 불문한 양성(兩性)의 평등이 언제나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동성혼을 이성혼과 차별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회법<sup>11)</sup>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요컨대 근대의 혼인제도가 가족제도는 단순히 혈연에 의하여 형성된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족관계도 보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혼의 남성이나 여성이 단독으로도 입양을 하여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나가고 있다. 결국 동성의 커플이 가족을 구성하고, 입양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할 경우 이 공동체는 이성의 커플이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와 달리 차별을 받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 (3) 민법과 가족제도

민법은 혼인과 관련하여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한 때 혼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혼인의 효과를 기술함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부부(夫婦)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혼인이 이성혼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법은 헌법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의 해석원리에 맞게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민법이 동성혼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위헌적인 법률이 될 것이다.

### (4) 동성혼에 대한 법원의 태도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그런데 동성혼을 한 두 파트너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동성혼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동성혼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고등법

11)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원의 판결도 있다. 이 두개의 사례는 동성애자의 가족공동체를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들이다. 한편 동성혼 가족에는 이성혼 가족에게 인정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복지 혜택이나, 휴가·수당 등의 혜택이나, 입원시의 동의권, 의료기록에 대한 열람청구권, 임대주택에 대한 승계권, 상속권, 양도세 감면, 소득공제 혜택 등의 혜택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동성혼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의 최종심인 대법원과 헌법해석의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진 적은 아직 없다.

## 5. 한국의 동성혼의 법률적 수용 방안

앞서 본 것처럼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는 동성혼에 이성혼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과 동성혼을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합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동성혼과 이성혼을 차별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결혼할 권리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동성애자에게 중대한 심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동성혼과 이성혼 모두에 기존의 혼인 외에 혼인과 성립과 해소의 요건이 다르고, 법률적 효과가 다른 '사회적 결합'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인정할 것인지는 따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처럼 동성혼과 이성혼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률의 개정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을 개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夫婦에는 동성혼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될 것이다.

## 6 결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수 많은 동성애자들의 가족은 전혀 법률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건, 이루지 않고 있건간에 수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조직적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시급히 우리사회에서도 동성애자의 가족공동체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절실하다. 그 방안은 이

성혼과 다르게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혼과 동등한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2-2.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입법례

Discussions in UN and State Practice on Same-Sex Partnerships

\* 본 논문은 <성평등연구> 9권,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2005)에 수록된 것을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입니다.

장복희

가톨릭대학교 법경학부 법학과 교수

세계는 지금 동성 간 혼인의 법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부 연예인의 커밍아웃과 국내 동성애자들의 첫 혼인식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sup>1)</sup>, 점차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혼의 법적 인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동성혼 문제를 금기시하고 공론화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동성애자는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sup>.

이 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존재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는 동성 파트너십(same-sex partnerships)<sup>3)</sup>에 관한 법적 인정을 UN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 입법례를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법제도와 관행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의의, 그리고 한국에서의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법제도 마련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고찰하려 한다. 특히 동성 커플이 상호간 부양 관계에 있고 생계와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동성애의 타당성과 동성혼의 인정 문제와는 별도로, 이들이 일상적인 평생의 삶과 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공동생활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도출하려 한다.

### I.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UN에서의 논의

#### 1. UN 인권위원회의 청원 사건

동성 파트너십(same-sex partnerships)은 UN에서 아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55년 만에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가 UN 인권위원회에

1 "국내 첫 동성간 공개 결혼식 성황" 인터넷 연합뉴스, 2004. 3. 7.

2 "에이즈연병, 국내 동성애자 11만 명 추정", 중앙일보, 1998. 1. 9.

3 이하 동성 파트너십 혹은 동성간 동반자 관계라 함.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브라질 정부가 제출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결의안은 캐나다와 유럽 국가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슬람국가와 바티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안건이 상정조차 못한 채 연기되었고, 2004년 역시 강한 압력으로 인해 브라질 정부는 중도에 포기하였다. 반대의 논리는 동성애가 종교적 교리에 위배되고 각국의 문화적 전통을 훼손한다는 것이다<sup>4)</sup>.

앞으로 UN에서의 이러한 회원국들의 태도는 UN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국내에서도 인정 여부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90년대 들어서야 국내 동성 파트너십의 법적 인정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한 국제 소송이 있었다. UN에서 동성 파트너십에 대하여 언급되고 사안을 다루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92년 Toonen 사건은 UN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제기된 사안으로, UN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6개국에 비준한 1966년 UN이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 제26조와 제2조 1항에서의 "성별(sex)"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이 사건에서, 니콜라스 투넨(Nicholas Toonen)은 게이 인권활동가로서, 호주 타스마니아주에 살고 있었으며, 성인 남성 간에 성적 접촉(sexual contact)을 금지하는 반게이법(anti-gay law, anti sodomy law)이 B규약 제2조 1항(차별금지 원칙), 제17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1994년 4월 4일, 위원회는 타스마니아주의 게이법 제17조는 Toonen의 사생활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제2조 1항과 제26조에서의 '성별'(sex) 용어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결정에 따라, 타스마니아주 의회는 1997년 5월 1일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주법을 무효화하였고, 호주 연방정부는 시민의 성적 사생활(sexual Privacy)을 보호하는 국내법은 통과시킴으로써 UN의 결정을 준수했다.

Toonen 사건의 의의는, 동성애를 B규약상 차별금지원칙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동성 파트너십의 인정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학자는 B규약 제17조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성적 지향에 근거한 혼인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는 미혼의 이성 관계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등성(equality)에 기초하여 미혼의 동성관계도 이 조항의 의미와 해석에 따라 인정해야 하며<sup>6)</sup>, 이러한 주장은 인간 간의 동등한 대우를 이루는 것이고, 게이나 레즈비언은 이성간에 인정되는 동등한 정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4) 이성훈, "남성이든 여성이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동성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4, 11.

5) Toonen v. Australia(Communication No. 488/1992)(31 March 1994) 1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ports 97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6) Walker, Kristen L., 2001, "Human Rights Law and Same-Sex Relationships: Where to from Here?", Robert Wintemute and Mads Andenas(eds.),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Partnerships? A Study of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Hart Publishing, p. 743.

한편 두 명의 레즈비언 커플이 UN 인권위원회에 부탁한 국제청원으로 1999년 Joslin 사건<sup>7)</sup>에서, 동성 커플은 뉴질랜드 정부가 동성 커플의 혼인권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B규약 위반임을 주장했다.<sup>8)</sup>

뉴질랜드의 혼인법은 동성간 커플의 혼인신고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거부는 지방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뉴질랜드의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차례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면서 1955년 뉴질랜드의 혼인법의 요건은 분명히 남녀간의 혼인에 한정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원고 줄리엣 조스린(Juliet Joslin)은 뉴질랜드에서 혼인할 수 없는 것이 B규약 제2조(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23조(가족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제26조(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의한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UN 인권위원회는, B규약 제23조 2항은 혼인의 개념으로 "혼인 적령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혼인할 권리와 가정을 이룰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성 커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고 뉴질랜드의 혼인법은 B규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B규약 23조는 B규약의 목적상 혼인의 개념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는 B규약의 여타 조항의 일반적인 규정도 제23조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Joslin 사건의 의의는, 동성애자의 혼인은 B규약상 혼인의 권리에 개념에는 적용될 수 없고, 동성애자에게 혼인의 자유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B규약상에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서도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남녀간의 혼인권으로 특정하고 있다. B규약 제23조 2항은 "혼인 적령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혼인할 권리와 가정을 이룰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권을 인정하는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동성혼의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성적 소수차별금지 내지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겠다.

위 두 가지 UN 인권위원회에서 다룬 동성애자와 관련한 사건에서 보면, 현행 국제 법규로는 제도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성애 관계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무차별 원칙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제도상 이성혼과 같은 동성혼은 아직까지 규정상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 파트너십은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하여 비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동성 파트너십에 대한 가장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법적 발전은, 공격적인 국제소송전략을 취하는

7) 뉴질랜드 정부에 대하여 B규약 제1 선택의정서에 의하여 UN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청원 902/1999(Communication No. 902/1999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gainst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1998년 12월에 제기.

8) Helfer Laurence R, 2001, "Will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Require Recognition of Same - Sex Mariages?", Rebert Wintemute and Mads Andenaes(eds.), Wintemute and Mads Andenaes(eds.),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Partnerships ? A Study of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Hart Publishing, p. 739, Communication No. 902/1999.

것이라기보다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내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국제소송을 선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차원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정치적으로 옹호하며, 국제적으로 레즈비언과 게이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 사실 조사의 노력을 통하여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국제인권소송은 가장 성공적일 방안이 된다.

동성 파트너십의 인정을 위한 국제인권법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볼 때, 여러 국제 인권조약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가능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법 해석과 새로운 법 제정 시에는 다음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i)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 ii) 중요한 인간관계에서의 비재정적 혜택(non-financial benefits for important relationships) 제공, iii) 피부양자를 돌보는 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state support for those caring for dependents)과 같은 일정한 기본 영역에서, 동성 파트너십의 법적 인정과 혜택을 얻기 위하여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할 수 있다<sup>9)</sup>.

## 2.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A규약) 제7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동성애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적용될 수 있다. 노동이 동일한 경우,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10)</sup>.

노동권은 직접적으로 생존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A규약 제9조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제11조는 "적절한 식량, 의복과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적당한 생활 수준을 향유하고,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구할 권리"도 서로 부양관계에 있는 동성 파트너 간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생활 기준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sup>11)</sup>.

A규약 제10조는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인 가족에 대해서는, 특히 가족의 창설을 위하여 가족이 부양 아동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은 광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하고, 출생 또는 기타 사정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가족"(family)은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적절한 시도로서, 국가로 하여금, 성별에 관계없이 부양 아동을 돌보는 이에게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논의하는데 유용하게 원용될 수 있다<sup>12)</sup>.

9) Ibid., p. 752.

10) Ibid.

11) Ibid., p. 753.

12) Ibid.

A규약 제 12조는 "질병시 모든 의료와 간호를 보장하는 조건의 창출"을 포함한 "자신을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health)은 하나의 권리(a right)로 인정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건제도를 발전시킬 의무를 이용하여야 한다<sup>13)</sup>. A규약 제2조 2항은 이들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무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가 Toonen 사건에서 인정한 것처럼<sup>14)</sup>, 이 규정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로 해석할 수 있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은 인간관계의 인정과 아동의 돌봄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15)</sup>. 동 협약 제2조 1항은 이들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무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Toonen 사건에서 적용된 것처럼, 이는 성적체성에 근거한 차별도 포함하여야 한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는 "체약국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나 정형적인 역할에 따른 열등감이나 우월감의 사상에 근거한 편견, 관습과 모든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는 ...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성별의 의한 차별법과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UN의 국제인권법은 실제로 집행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직면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성별간 평등과 인종간 평등과 같은 인권사안에 대하여,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은 국가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국내 영역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근거로 인권활동가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Eric Heinze가 B규약의 범위 내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인권법은 중요한 "정치적, 도덕적 상징적 및 교훈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sup>16)</sup>.

이들 국제인권법은 국내에서의 인권투쟁을 위하여 중요한 법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체약국은, 국제적인 공약으로서 특정 사안에서 이들 조약에 의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조약의 공통된 내용은 주체가 혼인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인으로 되어있고, 인간으로서 생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한 권리와 자유, 보건, 의료보험, 노동권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건강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성별과 성적 지향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권리는 결국 생존과 안전의 권리로 표현될 수 있고 이 권리는 성별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13) Ibid.

14) B규약 제2조 1항과 매우 유사.

15) 아동권리협약 제5조, 제9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참조.

16) Heinze, E., 1995. *Sexual Orientation: A Human Right*, Dordrecht: Martinus Nijhoff, pp. 215-216 pp. 224-225.

### 3. 새로운 국제인권법의 발전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은 모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국제인권조약의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17)</sup>.

성정체성과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다루는 협약이 채택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고 아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기존의 국제인권법이 동성 파트너십의 평등성과 정의의 기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러기에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가족의 개념 정의의 확대와 도전과, 동성 커플에서 피부양자를 돌보는 자에게까지 재정적 혜택을 재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sup>18)</sup>.

앞으로 성정체성(sexuality), 동성 파트너십과 관련한 조치는, 이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일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법을 통해 보장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II.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각국 입법례

국내적 차원에서 덴마크가 1989년 동성 파트너 등록법(a registered partnership law)을 시행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된 이후, 38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동성 커플은 혼인권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이성 커플이 오랫동안 누렸던 의미 있는 일부로서의 권리, 특권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sup>19)</sup>.

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i) 첫째,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권(partnership rights)을 인정하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고<sup>20)</sup>, ii) 둘째 사법부 즉 국내 법원에 의하여 판사가, 기혼의 혹은 미혼의 이성 커플에게만 인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기존의 법을 뒤집는 헌법상의 평등 규범(constitutional equality norms)을 이용하는 것이다<sup>21)</sup>.

17) E. Heinez, 1995. pp.289-303 참조.

18) Kristin L. Walker, 2001, p. 756.

19) 이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로서는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IGLHRC Fact Sheet: Registered Partnership, Domestic Partnership, and Marriage(San Francisco, IGLHRC, 6 Nov, 1998), <http://www.iglhrc.org>, 참조.

20)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21) 예컨대 캐나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 1. 유럽의 경우

### 1) 덴마크

덴마크는 1989년 10월 1일 세계 최초로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에게 인정되는 시민권 혜택을 인정한 동성 파트너십법이 발효하였다. 덴마크법에 의하면 완전한 혼인법은 아니지만, 이 파트너십법은 동성 커플에게 모든 혼인에 있어서의 권리 - 상속 보험, 연금, 사회적 혜택, 소득세 감면, 비고용 혜택과 사회적 혜택 및 이혼시 부양 책임 - 가 인정된다 단, 교회에서의 혼인식 거행, 아동 입양 그리고 인공수정을 위한 국가의 사회의료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sup>22)</sup>.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세계 동성 파트너십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적어도 커플 중 하나는 그러한 법을 가진 국가의 시민이어야 한다.

2000년, 덴마크는, 동성 커플에게 이전에 이성혼에만 인정한 아동양육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게이 커플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sup>23)</sup>.

이러한 변화의 성공과 확산은 현재 덴마크 사회에서 10여 년 내에 동성 커플에게도 완전한 혼인권을 인정하는 논의를 이끌고 있다<sup>24)</sup>.

### 2)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속국으로 국내 자치와 대외 문제는 덴마크의 지휘를 받고 있고, 덴마크가 1989년 파트너십법을 채택하였을 때, 그린란드는 이 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1994년이 되어서야 그린란드는 이 법을 채택하였다<sup>25)</sup>.

### 3) 아이슬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아이슬란드의 Althing<sup>26)</sup> 의회는 의회 의원 17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44 찬성, 1 반대, 1 기권으로 국내 동성 파트너십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1996년 6월 27일 아이슬란드의 게이자존의 날(Icelandic Gay Pride Day)에 발효되었다<sup>27)</sup>.

22) Status Same-Sex Partnerships/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http://web.qx.net/ieff/gayky/marriage.htm> 참조).

23) Governments which have recognized same sex relationships ([http://www.religoustolerance.org/hom\\_mar4.htm](http://www.religoustolerance.org/hom_mar4.htm) 참조).

24) Status Same-Sex Partnerships/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 (<http://web.qx.net/ieff/gayky/marriage.htm> 참조).

25) Ibid.

26)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의회.

27) Status Same-Sex Partnerships/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http://web.fx.net/ieff/gayky/marriage.htm> 참조).

#### 4) 네덜란드

1996년 12월 네덜란드 의회 하원은 덴마크의 예와 거의 비슷하게 찬성 150 반대 104로 동성 파트너십법을 승인하였다. 1998년 1월 1일,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은 입양을 제외하고는 이성 커플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가진다(편집자주).

2000년 12월 19일, 네덜란드 정부 상원은 네덜란드에서의 혼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1년 4월에 발효된 혼인제도개방법(Act Opening the Institute of Marriage)으로서, 모두 네덜란드 시민이거나 네덜란드에서 거주가 인정되는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은, 완전한 시민혼의 혜택을 누리고 입양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네덜란드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한 세계 역사상 첫번째 국가가 되었다<sup>28)</sup>.

#### 5)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파트너십법을 모델로 하여, 양원에서 상원 58-40, 하원 18-16으로 파트너십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93년 8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덴마크의 파트너십등록법과 거의 동일하다<sup>29)</sup>.

#### 6) 스웨덴

스웨덴은 덴마크법을 모델삼아 법적으로 동성 커플에게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한 세계 2번째 국가가 되었다. 스웨덴 의회는 찬성 171, 반대 141, 기권 5 그리고 불참 32로 파트너십법을 인정하였다. 이 법은 덴마크의 그것과 거의 같으며 1995년 1월 1일 발효하였다<sup>30)</sup>. 스웨덴 의회는 2002년 5월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초 발효될 이 법안에 따라 법적 파트너 관계로 공식 등록된 동성애자들은 국내외에서 자녀를 입양하고 양친으로 등록할 수 있다<sup>31)</sup>. 2000년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스웨덴에 적어도 2년 이상 살고 있는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다<sup>32)</sup>. 2004년 3월 스웨덴 의회 법사위원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3개 법안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sup>33)</sup>.

28) Ibid.

29) Ibid.

30) Ibid.

31) "스웨덴 동성 부부에 입양권 부여", 경향신문, 2002. 3. 8.

32) <http://www.riksdagen.se/bik/beslut.asp?ptnr=1233> 참조.

33) "스웨덴, 동성결혼 허용 법안 추진", YTN, 2004. 3. 3.

편집자주)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동성애자 커플의 입양도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2004. 2. 16. '동성결혼' 네덜란드 2001년 첫 합법화)

### 7) 프랑스

프랑스법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회는 1999년 10월 국내 동반자법 혹은 파트너십법을 통과시켰다. 시민연대협정(Pacte Civile de Solidarite, 이하 PaCS)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전통혼의 법적 혜택의 일부를 동성 커플과 미혼의 이성 커플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sup>34</sup>).

PaCS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다. 공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서를 법원에 공동 제출하면 된다. PaCS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호간 물질적 조력"의 의무를 지며, 일상생활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계약 이후에 얻은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으로 소유한다.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 계약 등도 혼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 받는다. PaCS를 통해 동성 커플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상속권 및 입양권 등에 있어서는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sup>35</sup>).

즉 PaCS는 그 용어가 시사하듯이 시민연대협정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려고 한다면, 이를 법제도로써 보호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데 서로 연대하며, 삶의 울타리를 법적으로 더욱 굳건히 해 주고자 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 8)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17일 동성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등 일부 주 정부들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 시행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동성결혼이 가정과 혼인의 순수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동년 8월 1일부터 동성 부부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독일 하원은 2000년 11월 '동성간 평생 파트너십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일부 주 정부가 위헌 소송을 냈었다. 이 법에 의하여 파트너는 '인척'(relatives)으로 인정되고, 동성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상속과 건강보험 수급권, 배우자 입원시 병원 면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sup>36</sup>).

### 9) 헝가리 (동유럽 체코, 및 슬로베니아 추가)

1996년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헝가리법에 의하여 이성간 보통법 혼인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미혼의 이성 커플에게 부여하는 동일한 기본적인 혜택을 동성

34 <http://www.france.qrd.org/actualites/991015/index.html>.

35 The Pacte Civil de Solidarit?(<http://www.altavista.com/web/results?itag=wrx&q=Pacte+Civie+de+Solidarite&kgs+1&kls=0> 참조).

36 "독일, 헌법재판소, 동성 결혼 인정", 중앙일보, 2001. 7. 17.

커플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단 아동 입양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은, 입양권을 제외하고는, 현재 상속권, 연금을 비롯한 보통법 혼인관계의 모든 특혜를 누린다<sup>37)</sup> (편집자주2).

#### 10) 벨기에

벨기에는 2001년 6월 22일 동성애자의 혼인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동성 부부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다<sup>38)</sup>. 2002년 3월에 통과된 이 법은 게이 커플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공동은행 계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sup>39)</sup>.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이다(편집자주3).

#### 11) 영국

런던은 이미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고 있지만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4년 3월 동성애 커플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Bill) 초안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성 커플은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 '동반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자녀양육, 재산상속, 의료 및 연금 혜택 등에서 이성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동반자 등록을 위해서는 2명의 증인과 함께 관공서에 나와 등록 담당 관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 서약서와 유사한 '동반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혼 시 보통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중재를 거친 뒤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비, 위자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보수 세력의 반발을 우려, 시민동반자법에 혼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헌신적인 관계를 갖기로 계약한 모든 커플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한을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동성애자들도 파트너에 대해 헌신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할 권리가 있다"면서 시민동반자법은 성적 취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sup>40)</sup>. 2002년 11월 영국 하원은 동성애자 커플과 미혼 커플에게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37) Governments which have recognized same-sex relationships(<http://www.grg5.asn-wien.ac.at/comenius/homosexuals.htm> 참조. Status Same-Sex Partnership/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http://web.qx.net/jeff/gayky/marriage.htm> 참조).

38) "벨기에, 네덜란드 이어 두번째 동성결혼 허용". 조선일보, 2001. 6. 24.

39) Gay Marriage Rights . The Law Around the World(<http://mindprod.com/marriage.html> 참조) .

40) "영 정부,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인터넷 연합뉴스, 2004. 3. 31.

편집자주2) 동유럽에서는 헝가리에 이어 체코와 슬로베니아에서도 2006년 7월 의회에서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2006.6.7 '동유럽에 부는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 / 2006.7.24 365gay.com 'Slovenia OKs Domestic Partnership')

편집자주3) 벨기에는 2005년부터 동성부부의 입양이 허용되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2005. 12.2 '벨기에, 동성부부 자녀입양 허용법 하원 통과')

법안을 통과시킨다<sup>41)</sup>(편집자주4).

## 12) 스페인

1597년 스페인 의회는 덴마크법과 유사한 국내 파트너십법을 통과시켰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보수적인 가톨릭 교도인 라틴계 국가에서 동성 결합을 인정한 경우는 없으나, 스페인의 새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는 2004년 3월 18일 "사회노동당에서 현재 동성 결합을 사실상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혼인'으로 호칭하기보다는, 동성 커플에게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sup>42)</sup>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라고 해도 나바라와 바스크 지방에서는 오랫동안 삶을 함께 한 동성 부부에게 이성 부부와 같은 민법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sup>43)</sup> (편집자주5).

## 2. 미주의 경우

### 1) 미국

약 20여 개 도시가 동성 관계 등록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법적 의미는 없다. 2000년 버몬트주가 동성 커플에게 완전한 법적 권리를 주는 최초의 주가 되었다. 버몬트 주 대법원이 동성 3커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버몬트주 의회는 동성 커플에게 동일한 권리, 의무와 혜택을 부여하는 혼인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현재 이러한 접근인 시민연합법(Civil Union)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혼인과 유사한(marriage-like) 관계로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버몬트주에서 동성 커플에게 이성혼 커플이 법

41) "영국, 동성애 커플도 입양 허용", 중앙일보, 2002. 11. 5.

42) "스페인, 동성결혼 허용 추진", 문화일보, 2004. 3. 19.

43) "유럽 각국, 동성결혼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인터넷 연합뉴스, 2004. 3. 11.

편집자주4) 영국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시민동반자법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 법안에서는 동성간에는 '결혼' 대신 '결합 union' 을, '이혼' 대신 '분해 dissolu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하나 유산, 세금, 연금 등에서 이성애자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세계일보 2006.1.31. "사랑해도 될까요" 금기 깬 동성혼인)

편집자주5) 스페인에서는 2005년 동성간의 결혼 및 입양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참고자료: 2005. 7. 1. 한겨레 '스페인의회 동성결혼 합법화 통과')

적으로 누리는 동일한 보호와 혜택을 부여한 Baker v. Vermont 사건에서의 버몬트 대법원 판결의 결과의 소산으로<sup>44)</sup>, 동성애자에게 혼인과 병행하는 제도를 구상하면서, 버몬트주는 혼인의 "ㅎ"자를<sup>45)</sup> 떠올리지 않으면서, 혼인과 법적으로 동일한 훌륭한 동반자 관계 혹은 국내 파트너십 개념을 창출한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분리하지만 동등한"(separate but equal)<sup>46)</sup>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2004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미 의회 사상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으로 규정한 주 가족법 문안을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렵고, 동성간 결합이 법적 보호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47)</sup>. 메사추세츠주는 2004년 5월 17일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되었다. 2003년 11월 주 대법원이 동성간의 혼인의 권리를 인정할 판결이 발효되어 동성 커플에 혼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시작했다<sup>48)</sup>.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4월 17일부터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연방의회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9)</sup>. 부시 대통령은 미국 헌법 수정안에서 오직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만 혼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혼인은 신성한 제도로 일부 행동주의자들의 판단에 따라 재정의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50)</sup>. 미국 성인의 55%가 동성간의 혼인을 합법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sup>51)</sup> (편집자주6).

## 2) 캐나다

1999년 6월 10일 퀘벡(Quebec)주는 동성 배우자들을 보통법 배우자와 동등하게 다룬 첫 번째 주가 되었으며, 그 이후 많은 지역이 조세, 근로 기준, 자동차보험, 연금 혜택, 공공 분야에서의 은퇴 및 사회 지원에서 기존의 혼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고 있다<sup>52)</sup>. 2004년 12월 9일 네델란드와 벨

44) M. Bonauro, "Vermont House Gives Final Approval to Civil Union Bill" Gay and Lesbian Advocates and Defenders (GLAD), 2000(www.glad.org 참조).

45) 영어로는 marriage의 "m"자.

46) 미 연방대법원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분리하지만 동등한"의 법리에 의한 흑백의 분리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7) "캘리포니아 하원 법사위 동성결혼 법안 통과", YTN, 2004. 4. 21.

48) "미 매사추세츠주 동성결혼 합법화", 중앙일보, 2004. 5.17.

49) "부시, 동성결혼 금지 의회에 다시 촉구", 매일 경제, 2004. 5. 18.

50) "미 매사추세츠주 동성결혼 첫 허용", 미니투데이, 2004.5.18.

51) "미 국민 55%, 동성결혼 법으로 금지해야", 인터넷 연합뉴스, 2003. 9. 23.

52) [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in/recognition\\_of\\_same.htm](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in/recognition_of_same.htm) 참조.

편집자주6) 미국 뉴저지주 대법원은 2006년 10월 동성커플도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주의회에 180일 안에 결혼법 개정 혹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만약 뉴저지주 의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게 될 경우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한 매사추세츠주와는 달리 다른 주에서 넘어온 커플들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미국 전역의 동성애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참고자료 : 2006.10.29 연합뉴스 '미중간선거 동성결혼 막판 선거쟁점 급부상')

기에 이어 캐나다는 동성 결혼의 족쇄를 사실상 풀었다. 캐나다 대법원은 "현실<sup>53)</sup>에 맞게 헌법을 재해석해야 한다"면서 혼인권을 게이와 레즈비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연방정부의 시도를 공인했다. 폴 마틴 총리는 "정부는 새 법안을 가장 빠른 시기에 마련해 2005년 2월 제출할 방침이며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sup>54)</sup> (편집자주7).

### 3) 브라질

브라질의 게이 파트너십법의 주 내용은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에 대하여 "상속, 승계, 혜택, 공동 임금 선언, 외국인 파트너를 얻는 경우 국적을 취득할 권리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공동 소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 법은 1996년 12월 상원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sup>55)</sup>.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남부 지역 리우데주술 주 법원이 2004년 12월 4일 동성애 커플간 민법적 결합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리우그란데주술 민형사법원 명의로 법원 명령 형식으로 발표된 성명은 "동성애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의 정확성과 관련한 문제로서, 그들은 법에 의해 규정이 되어질 만하다"고 하였다. 법원 명령은 동성 커플에 대해 상속, 자녀 양육, 보험 혜택 및 연금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sup>56)</sup>.

## 3. 아시아의 경우

대만은 2003년 11월 8일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합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sup>57)</sup>.

중국에서는 현재 동성애를 '성변태'로 보지 않고 '성심리장애'(性心理障碍)로 간주하고 있다<sup>58)</sup>.

53) '캐나다의 현실'이란 3,000여 명의 동성결혼이 이미 인정되는 등 이성간 배타적 결혼을 의미하는 전통적 결혼의 정의가 무너진 상황을 의미한다.

54) "加 동성혼 허용. 大法 '현실 맞게 헌법 재해석', 美 등 합법화 논란 영향 클듯" 한국일보, 2004. 12. 10.

55) Governments which have recognized same-sex relationships (<http://www.Grg5.-asn-wien.ac.at/comenius/homosexuals.htm> 참조).

56) "브라질서도 동성결혼 허용", 인터넷 연합뉴스, 2004. 3. 15.

57) '타이완,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공개', YTN, 2003. 11. 8.

58) "중국, '동성애는 성 심리장애'", 동아일보, 2001. 4. 16.

편집자주7) 캐나다의회는 2006년 6월 이성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교회 등은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식장소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참고자료 : 2005.6.29 세계일보 '캐나다 동성결혼 허용')

2004년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된 중국 최초의 동성 커플이 탄생했고, 이를 계기로 중국 당국이 성 전환과 동성애 관련 법률 마련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59)</sup>. 일본은 동성애를 더 이상 정신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sup>60)</sup>.

#### 4. 동성 파트너십의 일부 인정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sup>(편집자주 8)</sup>, 뉴질랜드, 이스라엘<sup>61)</sup>, 아르헨티나, 호주 일부 지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포르투갈, 브라질, 콜롬비아는, 보건, 건강, 재산과 주거 등과 관련한 특별히 기본적인 부분에서만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다<sup>62)</sup>.

#### 5. 기타국가

그 외에도 동성혼이 합법적이지 않으나 동성애자의 "혼인"이 보고되는 국가로는 캄보디아, Kampuchea, 네팔, 대만, 이태리, 라트비아, 콜롬비아<sup>63)</sup>가 있고, 대부분 중동,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고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사형을 시키는 국가도 있다<sup>64)</sup>.

59) "중국 대륙서도 첫 동성 커플 탄생." 헤럴드 경제, 2004. 4. 27."

60) "유럽 각국 동성결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연합뉴스, 2004. 3. 11.

61)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사망한 동성 배우자의 연금을 생존하고 있는 게이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동성 파트너십이 합법적이지는 않으나, 앞으로 이러한 법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적 판결들이 있다.

Status Same-Sex Partnerships/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 (<http://web.qx.net/jeff/gayky/marriage.htm> 참조).

62) [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n/domestic\\_partner\\_employment\\_benefits.htm#same-sex%20partnerships%20receive%20limited%20recognition](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n/domestic_partner_employment_benefits.htm#same-sex%20partnerships%20receive%20limited%20recognition) 참조.

63) [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_Information\\_by\\_subject.htm](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_Information_by_subject.htm).

64)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가 불법인 국가: 알제리, 앙골라, 베닌, 부룬디, 카메룬, 케이프 베르데, 지부티, 이디오피아, Guinea Conakry,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마우리티니아, 마우리티우스, 모로코, 세네갈, 수단, 스와질랜드, 토고, 튀니지,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파키스탄, 솔로몬공화국, 서 사모아, 체첸, 바레인, 이란,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바바도스, 그라나다, 니과라과, 푸에토리코, 세인트 루시아, 트린다드 토바고([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n/countries%20where%20same%20sex%20acts%20illegal.htm](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n/countries%20where%20same%20sex%20acts%20illegal.htm)).

게이 동성애가 불법인 국가: 보츠와나, 가나, 캄비아, 케냐, 모잠비크, 남미비아, 나이지리아, Seychelles, 시에라 레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부탄, 미얀마, 쿡아일랜드, 피지, 인도, Kiribati, 라오스, 말레이시아, 말다비스, 마셜아일랜드, Науру, 네팔, 니우, 파푸아 뉴기니,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Tokelau, 통가, 투발루,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계남, 쿠웨이트, 케아만 아일랜드, 자메이카, Turks and Caicos Islands([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n/countries%20where%20same%20sex%20acts%20illegal.htm#For%20gay%20men%20only](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n/countries%20where%20same%20sex%20acts%20illegal.htm#For%20gay%20men%20only)).

편집자주8)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부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동성결합(Civil union) 법-입양권, 및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보장-을 올해 11월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최초로 동성커플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 2006.11.14 BBC News 인터넷 판 'S.Africa approves same-sex unions')

### Ⅲ.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 1. 국제법적 고찰

UN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아직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문화, 종교와 이념을 가진 UN회원국 간의,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와 같이 동성혼이나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하면, 동성 파트너십에 대하여 사회에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금기시하는 중동,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국가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협약 체결이나 합의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의 UN의 입장은 동성 파트너십에 대한 본격적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의 UN 인권위원회의 청원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성혼에 대하여는 B규약상 동성간의 혼인규정이 없는 관계로 동성간 혼인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근거규정이 국제법적으로 마련된다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의 핵심 원칙은 차별금지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이다. 국제인권조약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국제적 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으로 불리우며,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제문서의 공통점은 주체가 인류 모든 개인이 되고 있는 점이다. "모든 이는"(everyone is, all are) "모든 인간"(all human being are) 그리고 "어느 누구도"(no one shall be)로 표현되고 있고, 지구상 어느 개인도 성별의 관계없이 이들 규정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공언된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제3조), 노예신분이나 노예상태로부터의 자유(제4조),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혹은 굴욕적인 처우로부터의 자유(제5조), 모든 사람이 법앞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제6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7조),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당하지 않을 자유(제9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8조),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제12조), 비호를 구할 권리(제14조), 결혼과 가정을 이룰 권리(제16조)(이 권리만 성인 남녀에 한정하고 있다), 결혼과 그 해소에 있어서 성년 남녀의 동등한 권리(제16조),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제17조), 종교, 사상, 표현 및 결사의 자유(제18조, 19조, 20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22조), 일할 권리와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권리(제23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25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6조) 등이 있다. 이들 권리와 자유는 보편적인 인류 개인의 권리로서, 여전히 동성애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권리들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국제문서와 국내 헌법에서 인권보장의 척도로 인용되고 있다. A규약상 개인의 권리로는, 노동권(제6조), 공정한 임금,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공휴일에 대한 보수 등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제7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 모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 원조를 포함한 가족보호(제10조), 적당한 식료, 의복과 주택을 포함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또한 생활조건이 부당한 개선을 구할 권리(제11조), 모든 사람이 그가 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12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이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제13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제1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B규약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는, 생명권(right to life)(제6조), 고문과 비인도적 취급으로부터의 자유(제7조), 노예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제8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취급될 권리(제10조),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자유(제12조),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제14조), 형법 불소급에 의한 보호(제15조),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될 권리(제16조); 사생활 보호권(제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제19조), 집회의 권리(제21조), 결사의 자유(제22조), 혼인과 가정을 가질 권리(제23조, 이 규정은 남녀도 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제24조), 정치적 권리(제25조), 법 앞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26조)를 규정하고 있다.

A규약과 B규약은 체결국에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국제조약이며, 한국도 양 규약에 가입하고 있다. 한국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가입한 국제 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은 국내법의 효력이 있으며, 국제법의 실천을 국내법에 의한 이행에 달린 문제로, 일차적으로 인권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건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기증을 국내법에 규정으로 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하여 동성애자의 차별적인 법, 관행적 요소를 철폐하고,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내 법정에서 판사에 의한 국제법의 적극적인 적용도 중요하다.

개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히 생계유지가 신체의 자유 혹은 안전과 관련한 권리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차별없이 법 앞에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보건권, 주거권,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상속권 및 노동권 등은 동성애자에게 동성혼의 인정 여부와 동성애의 종교적, 이념적 정당성과는 관계없이 어떠한 법적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

## 2. 비교법적 고찰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크게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네덜란드, 벨기에와 캐나다처럼 이성혼자 동등한 법적 시민혼으로서의 인정하는 국가, 2) 혼인으로 보지는 않으나 혼인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성혼과 거의 이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동성 파트너십(동성간 동반자) 등록법을 도입한 국가, 3) 단지 배우자간의 혼인상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국가, 그리고 4) 동성애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가<sup>65)</sup>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성 커플이든 동성 커플이든 시민 모두의 친밀한 공동체 결합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민연대협정(PaCS)이라는 그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보호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시민혼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까지 극과 극의 정책을 보면,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성숙도, 법치주의, 지배정당의 성향 종교적 문화적 영향, 이성의 미혼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의 정도, 정치 경제적대국과 베네룩스 3국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같은 작지만 인권선진국으로 각국의 위상정립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이성혼에서 인정되는 상속권, 주거권, 보건권, 건강과 관련한 보험, 연금, 사회보장, 과세, 이혼 시 부양책임, 파트너에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 임대차 계약권, 아동을 위한 사회적 혜택, 배우자 병원 면회권, 배우자 사망시 시신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동성 커플도 과세시 경제적 단일체로 다루어질 권리, 신용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이혼할 권리, 그리고 재산 분배와 아동 양육과 부양에 관한 의무적 방법을 이행할 의무 등이 선별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혈연과 출산 중심의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가족개념이나 배우자간 관계와는 달리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는 서구와 일부 국가에서는, 우선 동성애자의 인간으로서의 인격성을 인정하고, 친밀하고 영속적인 동반자관계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선진적인 국가 관행을 보면, 살아 있는 개인 간의 인간으로서의 생존(human life, human being) 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필요한 법적 수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생활의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는 동성혼이나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혼인법이 국내 헌법규범에 위배된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65) 특히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는 국가는 불가리아,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쿠바이며, 동성애를 사형시키는 국가는 마우리타니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 IV. 결 어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에 동성애자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아직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문제를 금기시하고 있으나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30조에서 '성적(性的)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으로 마련함으로써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동성애자의 인권보호에 법적 근거를 두는 데 공헌을 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 파트너십의 논의보다는 동성애자에 대하여 어떤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 심지어는 에이즈를 옮기는 사람으로까지 심한 편견과 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도(人道)의 최대 적은 무지(無知)라 했다.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일은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다를 따 없는 도덕적 인격체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인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4년 출간된 3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한 인권백서에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성애를 정상적 성적 지향으로 여기는 사회의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을 위해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드러내는 교육용 교재, 교육내용의 금지 및 단계별 차별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성 파트너십은 한국에서 아직도 호주제 폐지와 같은 여성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미 세계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그 국가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관용의 수준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기존의 관념으로서의 혼인과 가족의 의미가 아닌, 진정한 동성애 문제나 동성 파트너십의 문제는 단순히 흥내를 내거나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개인간의 애정의 문제가 아닌, 절실한 삶의 문제로서 행복추구권의 실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생존과 안전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동성애자의 혼인권과는 독립적으로 상속권, 의료보험, 주거권, 연금, 보건권, 동거권 등, 인간의 생계와 건강한 정신적 신체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권리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보호하고 부양하며 돌보고 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동반자 관계와 가족 관계에 대한 경제 공동체의 법적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법은 동성애가 혹은 이성애가 정의로운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이념적 철학적, 종교적 논쟁에 관계없이, 어느 개인에게, 생존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 보호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혼인제도와 조화를 이루고 기존의 혼인개념과는 차별화된 동성간 동반자법이나 이와 유사한 법이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상호간 짧은 생애를 인간으로서의 권

리와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며 온전히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의 구축은 마련되어야 하고 이제 그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때다.

### 참고문헌

- Dynes, Wayne R., Donaldson, Stephen(eds), 1992, *Homosexuality: Discrimination, Criminology, and the law*, New York & London: Gerland Publishing, Inc.
- Gerstmann, Evan, *The Constitutional Underclass, Gays, Lesbian, and the Failure of Class-Based Equal Protec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mmerman, Craig A., Wald, Kenneth D., Wilcox, Clyde(eds), 2000, *Politics of Gay Right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lfer, Laurence R, 2001, "Will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Require Recognition of Same -Sex Marriages?", Robert Wintemute and Mads Andenaes(eds.), Wintemute and Mads Andenas(eds.),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Partnerships - A Study of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Hart Publishing.
- Robert Wintemute and Mads Andenas(eds.), 2001,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Partnerships-A Study of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Hart Publishing.
- Walker, Kristen L., 2001, "Human Rights Law and Same-Sex Relationships: Where to from Here?", Robert Wintemute and Mads Andenas(eds.),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Partnerships - A Study of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Hart Publishing.
- Communication No. 902/1999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gainst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 Stewart, Chuck, 2001, *Homosexuality and the Law, A Dictionary*, ABC CLIO.
- Toonen v. Australia(Communication No. 488/1992)(31 March 1994) 1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ports 97(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 Gay Marriage Rights, The Law Around the World (<http://mindprod.com/marriage.html>) .
- Governments which have recognized same sex relationships([http://www.religioustolerance.org/hom\\_mar4.htm](http://www.religioustolerance.org/hom_mar4.htm)).
-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IGLHRC Fact Sheet: Registered Partnership, Domestic Partnership, and Marriage(San Francisco, GLHRC, 6 Nov. 1998), <http://www.iglhrc.org>.
- M. Bonauto, "Vermont House Gives Final Approval to Civil Union Bill", Gay and Lesbian

Advocates and Defenders(GLAD), 2000([www.glad.org](http://www.glad.org)).

The Pacte Civil de Solidarit?(<http://www.altavista.com/web/results?itag=wrx&q=Pacte+Civile+de+Solidarite&kgs=1&kls=0>).

Status Same-Sex Partnerships/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http://web.qx.net/Jeff/gayky/marriage.htm> 참조).

[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n/domestic\\_partner\\_employment\\_bene.htm#same-sex%20partnerships%20receive%20limited%20recognition](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n/domestic_partner_employment_bene.htm#same-sex%20partnerships%20receive%20limited%20recognition)

강달천, 2000,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형주, 1999,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중앙영어영문학, 제4호, pp. 173-191.

한인섭, 양현아, 2002,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김성근, 2000, 기독교인 결혼원리의 연구,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加, 동성혼 허용, 大法 '현실맞게 헌법 재해석', 美 등 합법화 논란 영향 클듯" 한국일보, 2004. 12. 10

"국내 첫 동성간 공개 결혼식 성황", 인터넷 연합뉴스, 2004. 3. 7.

"독일,헌법재판소, 동성 결혼 인정", 중앙일보, 2001 7. 17.

"미 국민 55%, 동성결혼 법으로 금지해야", 인터넷 연합뉴스, 2003. 9. 23.

"미 매사추세츠주 동성결혼 합법화", 중앙일보, 2004. 5. 17.

"벨기에, 네덜란드 이어 두 번째 동성결혼 허용", 조선일보, 2001. 6. 24.

"브라질서도 동성결혼 허용", 인터넷 연합뉴스, 2004. 3. 15.

"부시, 동성결혼 금지 의회에 다시 촉구", 매일경제, 2004. 5. 18.

"스페인, 동성결혼 허용 추진", 문화일보, 2004. 3. 19.

"스웨덴 동성부부에 입양권 부여", 경향신문, 2002. 3 8.

"영국, 동성애커플도 입양 허용" 중앙일보, 2002. 11 5.

"영 정부,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인터넷 연합뉴스, 2004. 3. 31.

"에이즈연맹, 국내동성애자 11만명 추정", 중앙일보, 1998. 1. 9.

이성훈, "남성이든 여성이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동성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4. 11.

"유럽 각국, 동성결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인터넷 연합뉴스, 2004. 3. 11.

"중국, '동성애는 성 심리장애'". 동아일보, 2001. 4. 16.



## 제3부

#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준비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인권 이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왜 필요하고 그 운동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 어떠한 범주를 가지고 누구와 연대하여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따져보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와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3-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우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제기되는 배경과 필요성을 먼저 짚어본다.

#### (1) 현재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안고 있는 문제

현재 한국 사회에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즉 보통의 ‘정상적인’ 가족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또 보통의 ‘정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되는 형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상 가족’ 이라함은 보통 “경제적으로 서민층 이상의 가족일 것, 성적 정체성에서 이성애자 부부일 것,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될 것, 자녀(특히 남아 1인을 포함한 자녀)를 가질 것, 그리고 법률적으로 혼인 신고를 필한 사람들일 것” 등의 기준에 부합되는 가족으로 한정된다<sup>1)</sup>. 요약하자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혈연 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며 혼인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이러한 기본적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보통의 가족’ 이라는 표준적인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그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들을 주변화시킨다. ‘정상 가족’ 형태만이 수행 가능한 가족의 역할을 가족이 지니는 의미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족들은 그 실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비정상적’ 이고, ‘결손’ 이 존재하며 ‘건강’ 하지 못한 가족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정상 가족’ 이 아닌 가족들은 ‘정상 가족’ 을 모델로서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부족함을 매워 ‘주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거나 아예 가족이라는 테두리 바깥으로 밀려나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결국 가장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그 밖의 가족 형태들을 열등하고 문제 있는 가족, 또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자리를 매긴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가 동성애의 존재를 처음부터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동성애자로서 구성된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족임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동성애자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는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인 인식이 현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가 배제된 가족 제도의 현실 속에서 처음부터 가족 구성 자체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기도 한다. 사실상 동성애자 가족이 가지는 권리, 동성애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동성애를 배제하는 현재의 가족 이데올로기의 문제 속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제기된다.

1) 이재인, 「가족 차별 버리기를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가족’ 차별 드러내기, 실천적 대안 찾기』,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2005, 73쪽.

## 〈2〉 가족과 관련한 동성애자 차별

가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보호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족은 친족 관계로서 서로 상속권을 가지고 배우자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등의 재산상의 권리를 지니고 세금 혜택, 가족 수당의 지급, 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사회 보장 혜택, 의료결정권, 배우자의 국적취득권, 각종 사회복지적 혜택 등을 가진다<sup>2)</sup>. 뿐만 아니라 친지나 동료, 이웃들로부터 가족으로서 인식되고 인정받으면서 유무형의 지원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의 구성이 혈연과 이성 간의 법적 혼인,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입양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로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 자체가 박탈당해 있어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성 간의 결합과 달리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가족 구성의 자유도, 자유로운 가족 생활도, 관계 해소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혼 제도는 이성애자들만이 독점하고 있다. 사실혼 제도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성 부부 역시 일정 정도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동성애자 가족들은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동성애자 가족은 양육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혼인 등의 가족 구성의 권리와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성애자에게만 부여하고 동성애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성애자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동성애자들은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노동권에 있어 불리한 여성이나 저소득 동거 가구, 가사 전담 가족원 등 계층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이들일수록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더욱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구된다.

## 〈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국제적 변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제도화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일천한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추세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이미 인권보호와 반차별의 관점에서, 또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보장되어 가고 있으며 매해 새로운 국가들이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캐나다, 미국의 몇몇 주,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제도화되었거나 제도화 직전에 놓여 있다. 그 형태로는 특정한 권리들만을 부여하는 형태에서부터 네덜란드와 같이 결혼 제도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에

2)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세한 권리와 동성애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차별에 대한 내용은 본 자료집의 1부와 2부 참조

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모습까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또한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2003년 회원국들에게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sup>3)</sup>.

이와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 또한 평등권과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러한 세계적 경향에 동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국제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에서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동성애자 가족들이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 이들의 지위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한국 국민이 국내에서는 가족 제도에서 배제되어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로 가서 동성혼을 인정받고 오는 사례들 역시 생겨날 것이다<sup>4)</sup>.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이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또 이들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들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3-2.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목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문제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일차적으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와 동시에 몇 가지 적극적인 목표들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 〈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획득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획득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일차적 목표인 것이다.

3) 이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여울 연구책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287쪽 참조.

4) 이러한涉外私法(渉外私法)상의 문제는, 이경희, 「同性婚姻(Same-Sex Marriage)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3회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 2002, 492쪽에서 제기한 바가 있다. 실제로 2006년 6월에 있었던 〈동성애자가 선정한 '예쁜가족' 대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한 레즈비언 가족은 캐나다에서 혼인을 하였고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가족에 대해서는 본 자료집의 1부 1장 〈지유네 가족〉 참조.

여기서 추구하는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획득이란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 동성애자 진영과 무관하게, 또는 동성애자 진영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제도화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동성애자의 현실과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동성애자 가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제도적 보장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한 단계이고 과정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없이 동성애자의 가족 구성에 대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고 해서 동성애자 가족이 온전히 차별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가족은 동성애자라는 존재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냉대나 혐오 또는 기피의 눈길, 일상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넘어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동성애자로서 구성된 가족이 사회적인 인식의 측면에서도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사회적인 지지까지 확보되는 상태를 지향한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가족 제도에 대한 의미의 재구성을 필연적으로 동반함으로써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평등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충분히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사회적 담론 투쟁 과정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제도화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제도화되었을 때 동성애의 존재는 명문화됨으로써 법적으로 가시화된다. 물론 이미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현재는 동성애 항목이 삭제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차별 행위에 대한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 들어있는 등 전향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 이 법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범위나 사회적 논의와 변화를 형성하는 파급력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법제화만큼은 크지 않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제도화는 민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규정들의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동성애의 존재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동성애를 제도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되고 동성애에 대한 반차별적 인식이 성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넓게는 인권 의식의 향상 또한 추구할 수가 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추구하는 목표인 동시에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3〉 동성애자의 시민권적 주체 확립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동성애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획득해 나가고자 하는 시민권적 운동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이 운동을 통해 동성애자가 시민권적 주체로서 확립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동성애자 역시 이성애자와 동등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일이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경험을 통해 동성애자들은 시민-사회권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문제들을 사회적인 이슈로 능동적으로 제기하며 주체적으로 이를 쟁취하려는 활동을 벌여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이 2006년 다양한 사회·인권 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한 〈성전환자 성별 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활동은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성전환자 성별 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많은 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성전환자 실태 조사,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안 구성, 법안 발의, 발의 후 활동 등 활발한 사업을 벌였는데, 이는 앞으로의 입법 투쟁에 대한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의 발족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 동성애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과 권리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주체로서는 것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3-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영역

3장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확보하고자 하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살펴본다. 동성애자와 관련하여 가족구성권은 크게 동성혼, 파트너십, 공동체 가족구성권 등을 꼽을 수 있다.

#### 〈1〉 동성혼

동성혼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획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동성혼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현재 이성애자들은 결혼 제도는 독점하고 그에 따른 권리들을 누리고 있다. 결혼한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생활하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달리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않으므로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녀를 낳지 않는 이성애자들 역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은 명확하다. 또한 이성애자 개인이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선택이 처음부터 박탈당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차별이다.

차별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동성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동성혼의 권리를 보장하여 이성애자들만이 결혼 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2〉 파트너십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기존의 가족 제도에 편입해 들어가려는 시도가 아니다. 가족구성권 운동은 현재의 가족 이데올로기와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구성과 생활을 요구하고 '정상 가족' 중심의 가족 제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는 파트너십 제도 역시 획득해야 할 대상이다<sup>5)</sup>.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성 커플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가정적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 시민 결합(Civil Union), 시민 연대 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e, PACS) 등의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대체로 동성혼을 인

5) 파트너십은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 용어를 파트너 관계에 있는 2인이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일정 정도의 파트너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제도로 사용한다.

6) 각각의 구체적 제도에 대해서는 조여울 연구책임, 앞의 책, 112-118쪽 참조.

정하는 대신에 성립된 것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달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한다는 시각에서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이성 및 동성 간의 동거 관계와 같은 가족의 모습 역시 일정한 제도적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 〈3〉 공동체 가족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는 동성혼이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을 구성할 권리 또한 포함한다. 반드시 혈연이나 애정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를 꾸릴 권리 역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동성애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 동성애자 친구들끼리,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함께, 동성 커플들이 함께 또는 동성 커플과 그 친구들 등 여러 형태의 공동체 가족이 가능하며 실재한다. 이들은 단순히 같은 집에 산다는 의미에서의 하우스메이트(housemate)일뿐만 아니라 서로 보살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으며 가족으로서의 의식을 지닌다<sup>7)</sup>. 특히 사회 내에 어느 정도 구분된 특정한 생활 커뮤니티가 발달된 집단일수록 이러한 공동체 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동체 가족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는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관점에서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공동체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7) 이러한 공동체 가족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본 자료집의 1부 참조.

### 3-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주체 및 연대 단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함에 있어서 주체 및 연대 단위를 검토함으로써 누가 누구와 함께 이 운동을 벌어나갈 것인가 살펴본다.

#### 〈1〉 동성애자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당사자로서 동성애자들이 운동의 핵심 주체이다. 성적 소수자 인권 운동 진영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동성애자 가족들, 그리고 가족을 꾸리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동성애자로서 가족을 구성할 생각과 가능성을 가진 동성애자들, 동성애자가 가족구성권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차별을 발생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획득함으로써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동성애자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동성애자들 간의 연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진영의 연대가 가장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공동의 연대 테이블을 구성이 요청된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연대는 차별의 현실이나 사회의 변화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통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연대가 될 필요가 있다.

#### 〈2〉 ‘대안 가족’ 운동

한국 사회에서 ‘대안 가족’은 기존의 가족 제도와 이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된 가족뿐만 아니라 대체로 ‘정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인 한부모 가족, 무자녀 부부 가족, 조손(祖孫) 가족, 1인 가족, 동거 가족, 공동체 가족, ‘시설’ 공동체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정상 가족’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대안적이고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안 가족’과 관련한 운동과 내용을 공유하며, 크게는 ‘대안 가족’ 운동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대안 가족’ 운동, 다양한 가족 구성권 운동을 하는 진영들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함께 연대하여 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다양한 가족들의 특수성과 차

이를 고려하면서 보다 세밀한 시각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인권 운동과 소수자 운동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이것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을 제거하며 동성애자들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운동인 만큼 인권 운동의 한 영역이기도 하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가족의 자유로운 구성과 생활을 요구하는 동성애자의 인권 운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인 인권 운동 진영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연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운동으로서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다른 소수자 운동과 상통하는 내용을 지닌다. 특히 동성애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 가족구성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 여성 운동

여성 운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족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정상 가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여성운동 진영은 가족과 관련하여 차별을 분석하고 대안의 모색해 왔고 실천의 경험과 구축된 이론을 갖추고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현재의 가족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공유하면서 여성 운동과 광범위한 연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낮은 출산율로 비롯한 출산율 관리 담론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양상이 파트너 사이에서 생물학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동성애자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여성 운동과의 연대는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 3-5.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망<sup>8)</sup>

5장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앞으로 어떠한 한계와 문제에 부딪힐지를 점검하고 이 운동의 간략한 방법과 전망을 모색해 본다.

#### (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한계

##### 가. 시민권 운동의 문제와 가족 제도에 대한 운동이라는 문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마주치는 문제는 먼저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시민권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족 제도라는 점이다.

시민권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며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인권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권 운동은 시민권을 인정하는 주체를 국가로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독점적 권력을 확인한다는 점, 시민권의 작동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는 포섭과 배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sup>9)</sup>,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차별이 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문제를 지닌다. 국가의 인정을 통해서만 제도의 안쪽으로 진입하고 그러한 가족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며, 동성애자 가족들이 시민권적 권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들이 중심에 있고 동성애자 가족들은 '특수'하게 '주변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대상이 가족 제도라는 점에서는, 현재의 가족 제도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는 만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제도에 편입해 들어가려는 시도로 기능하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동성애자가 가족구성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성애 중심적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가족 제도 자체를 공고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획득' 하고 가족 제도에 '편입' 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시민권을 '재구성' 하고 가족 제도를 '변혁' 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를 완

8)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오가람이 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략」(『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토론회 자료집,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을 수정하고 축약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9) 앞의 두 시민권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와 관련하여 언급한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97-100쪽 참조.

벽하게 구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제도화, 법제화를 위한 실천을 조직하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낸 후에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가족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문제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일궈내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한국의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것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을 때에도 실제로 그 결과를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발생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제시된다. 첫째, 한국에서는 서구에서와 같이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동성애자가 별로 없어서 동성애자 대중에게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둘째,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문제보다는 취업 평등 등의 이슈가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점, 셋째 제도적인 가족 구성이 ‘공문서로 커밍아웃하기’를 의미하므로 취업 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 하다는 점 등이다<sup>10)</sup>.

이러한 지적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실질적으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성애자 대중들에게 ‘절체절명’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이슈이며, 특히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계층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수록 피해를 입기가 쉽고,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감안할 때 이것이 언제까지 동성애자로 ‘가정’을 꾸리는 수가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다는 점에서, 또 취업 평등의 이슈를 다루는 것이나 동성애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등은 위의 세 번째 지적에서와 같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과 맞물린 것으로서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또한 그러한 시각 역시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시급함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지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피해 나가야 한다. 설령 가족구성권이 획득한 이후 많은 수가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도, 그 적은 수에도 커다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최소한의 실효성은 담보한 것이다.

10) 상훈, 「美 대선이 한국 동성애자에게 주는 교훈」,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홈페이지의 〈레인보우 칼럼〉, 2004년 11월 5일.  
[http://www.ksarc.org/bbs/zboard.php?id=issue\\_rain](http://www.ksarc.org/bbs/zboard.php?id=issue_rain); 조여울 연구책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123쪽

## 〈2〉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

### 가. 파트너 관계 중심성의 극복

해외에서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대체로 동성 커플이 국가에 등록하고 여기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 동성 커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이 누릴 수 있는 결혼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다양한 혜택과 권리들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차별의 문제이다. 또한 가족 제도가 근거하고 있는 이념이 애정과 안정적인 성관계에 기반한 두 명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동성 커플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일차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기존의 가족 제도에 편입되고 그 제도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커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족은 이성이 결혼하여 꾸린 가족의 변형물로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그리 많이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다른 다양한 가족들을 배제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성애자가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가족 관계의 모습이 파트너 관계의 형태만은 아니다.

따라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로서 구성하는 다양한 가족에 눈을 돌려 커플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 등의 문제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물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포괄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동의 집중도가 떨어질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 나. ‘역풍’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역풍’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제도는 혈연주의에 강하게 매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주의 역시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의 해체’가 이야기되는 현실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움직임도 존재하고 있다. 이때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주장할 경우 기존 가족 제도를 유지하려는 흐름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또한 출산율을 관리하는 움직임에서 출산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동성애자 가족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 운동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 〈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방법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방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목표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각각의 주제를 시기와 단계에 맞게 집중하여 운동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연대체를 구성하고 여론 형성 등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들을 벌여 나가며, 힘을 실을 수 있는 다양한 연대를 확장하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의 형성한 후, 입법 투쟁 등의 제도적 실천들을 기획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가. 파트너 관계에 대한 단계적 접근

먼저 동성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서는 “성적소수자인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동성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사전 단계로서 정부나 법원”이 “구체적으로 기본 법률 내의 배우자의 권리를 개별 법 조항에서 확대 해석”하도록 하게 한 이후, “정서적, 경제적 동거 커플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을 “1단계 : 상징적 차원의 ‘파트너십’ 등록제도 실시”, “2단계 : 공공기관 및 기업, 시행규칙 등에서 파트너십 인정”, “3단계 : 파트너십 관계의 법적 권리 확대”의 단계를 거친 후, “결혼 제도의 완전 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초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을 여지도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역량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간단계를 뛰어넘거나 파트너십 제도화 운동과 동시에 동성결혼합법화를 위한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음도 물론이다.

#### 나. 다양한 가족 구성의 제도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제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 하는 과정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종의 ‘대안 가족’으로서 기존 가족이 가지는 권리와 혜택을 개방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파트너 관계에 대한 과정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즉 포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 속에서 파트너십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와 별도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여성계,

11) 조여울 연구책임, 같은 책, 122-127쪽.

성적 소수자 등이 모여 다양한 가족 구성과 관련한 연구 모임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임처럼 함께 모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이후 연대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정책적 실천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망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쉽게 쟁취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주체적 역량을 확보하는 일에서부터 목표와 전략을 조율하고 설정하는 일, 가족 제도와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집단들의 반발에의 대응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대단히 많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성과가 충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사회적 인식의 전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지난한 과제이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진영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의 결과를 온전히 장악하고 인권의 이념을 견지하면서 현실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 역시 어려울 수도 있다<sup>12)</sup>.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요구와 국제적인 변화에 비추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미래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면서 이 운동의 관점과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빠른 변화를 고려할 때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진영의 주체적 역량이 투입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획득은 그리 요원한 일이 아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운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보장하고 가족의 이념과 가족의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개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일구어내는 변화는 이제 곧 다가올 현실이다.

12) 이른바 '김홍신 법안'으로 불렸던 성전환자 성별변경법이 당사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거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사례처럼, 최근 한국에서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시민권의 문제들이 당사자들이 충분히 개입하지 못한 채 위에서 부과되는 방식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해서는 동성 결혼 등 동성 파트너 관계를 제도화하는 외국의 흐름에 맞추어 법적인 요구로서 위로부터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부록 01. 여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국내 출간 서적

저자	도서명	발행처	연도	비고
노라칼린	여성애자역암의사회사	책갈피	1995	여성애일반
데이비드엘킨트/이동원외	변화하는가족	이화여대출판부	1999	가족제도
또 하나의 문화동인들편	누구와함께살 것인가: 새로 쓰는 가족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2003	가족제도
서동진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문예마당	1996	여성애일반
수잔타이번	여성애자해방운동의 역사	연구사	1998	여성애일반
앵거스 맥레린/임진영	20세기 성의 역사	현실문화연구	2003	가족제도
에릭마커스	Is it a choice? 여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박영출판사	2006	여성애일반
여성한국사회연구소	가족과 한국사회(제2판)	경문사	2001	가족제도
우리사회문화학회	탈근대세계의 사회학	정림사	2001	가족제도
윤가현	여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7	여성애일반
이동원 외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가족	양서원	2001	가족제도
한국인권재단	일상속의역암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인권
장보태로/이선희	사랑과 결혼, 섹슈얼리티의 역사	새로운사람들	1996	가족제도
정인섭	사회적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가족제도, 법
조정문, 장상희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아카넷	2001	가족제도
캐빈 제닝스	역사속의 성적소수자	이연문화	1999	여성애일반
한인섭, 양현아	성적소수자의 인권(공역권04)	사람생각	2002	여성애, 인권
함인희	우리, 동거할까요	코드	2002	가족제도

부록 02.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관련 국내 비정기 간행물

저자	도서명	발행처	연도
강달천(중앙대)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0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인권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김민중(전북대)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가족법연구 제15권 2호	2001
김민중(전북대)	동성혼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비교사법 제9권 4호	2002
김민중(전북대)	동성혼-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입법례	법조 통권553호	2002
김민중(전북대)	동성애관계의 법적보호에 관한 시론적검토	인권과정의 2004. 5월	2004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변동과 다양한 가족의 출현	보건복지포럼 2005년 5월	2005
김승권 외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김태한	동성혼인문제의 법률적고찰	가족법연구 제13호	1999
레즈비언인권연구소	2005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레즈비언인권연구소	2005
서수경(동국대)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과 한국 가족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0권	2002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보고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	2006
양현아(서울대)	한국사회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범의처우	BK21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4
이경희(한남대)	동성혼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3회 한국법률가대회	2003
이경희(한남대)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본 동성혼인의 범위	아세아여성법학, 창간호	1998
이석태 변호사	성적지향에 근거한 법적차별과 대책	BK21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2
장복희	동성파트너십에 관한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입법례	가톨릭대성평등연구소	2005
조은	가족제도의 명과세로 공공동체의 가능성	창작과비평 1999 봄호	1999
조은희(한국여성개발원)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한국여성민우회	2004
한국계이민운동단체친구사이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토론회	친구사이	2006
퀴어문화축제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가능한가	제4회퀴어문화축제토론회	2004
한국여성민우회	가족 차별 드러내기, 실천적대안찾기	한국여성민우회	2005
한국여성민우회	경계와 차별을 넘어	한국여성민우회	2005
한국여성민우회	가족문화정책방향 및 실천적 대안찾기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2006
한채윤	동성애자의 결혼-금지된사랑의 합법화인가 낮은 결혼제도로의 편입인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6

부록 0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해외 단체 - A

중점사업	단체명	소재국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성소수자 가족 구성	Alternative Family Matters	미국	<a href="http://www.alternativefamilies.org">http://www.alternativefamilies.org</a>	PO Box 390618, Cambridge, MA 02139 USA	jenfer@alternatvefamilies.org
	Families Like Mine [Families Like Mine: Children of Gay Parents Tell It Like It Is 저자 Abigail Garner 홈페이지]	미국	<a href="http://www.familieslikemine.com">http://www.familieslikemine.com</a>	1730 New Brighton Blvd, PMB 175, Minneapolis, MN 55413 USA	info@familieslikemine.com
	Family Diversity Projects, Inc. - Love Makes a Family [성소수자 가족 사진전]	미국	<a href="http://www.lovemakesfamily.org/love-makesafamily.php">http://www.lovemakesfamily.org/love-makesafamily.php</a>	PO Box 1246, Amherst, MA 01004 USA	info@familydiv.org
	Family Pride	미국	<a href="http://www.familypride.org">http://www.familypride.org</a>	PO Box 65327, Washington, DC 20035 USA	info@familypride.org
	Lesbian and Gay Federation in Germany - Rainbow Family (Lesben- und Schwulenverband: LSBDF)	독일	<a href="http://www.typo3.isvd.de/712,0.html">http://www.typo3.isvd.de/712,0.html</a>	Pipinstr. 7, 50667 Cologne, Germany	family@isvd.de
	Rainbow Families	미국	<a href="http://www.rainbowfamilies.org">http://www.rainbowfamilies.org</a>	711 West Lake St, Suite 210, Minneapolis, MN 55408 USA	connect@rainbowfamilies.org
	We Are Family (WAF)	미국	<a href="http://waf.org/">http://waf.org/</a>	PO Box 30734, Charleston, SC 29417 USA	administrator@waf.org
	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 (PFLAG)	미국	<a href="http://www.pflag.org">http://www.pflag.org</a>	726 M S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36 USA	info@pflag.org
	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 (PFLAG) Canada	캐나다	<a href="http://www.pflagcanada.ca/en/index-e.asp">http://www.pflagcanada.ca/en/index-e.asp</a>	1633 Mountain Rd., Box 29211, Moncton, NB E1G 4R3 Canada	execdirector@pflagcanada.ca
	Freedom to Marry Coalition	미국	<a href="http://www.freedomtomarry.org">http://www.freedomtomarry.org</a>	116 West 23rd St, Suite 500, New York, NY 10011 USA	info@freedomtomarry.org
성소수자 결혼 평등권	Marriage Project - Hawaii	미국	<a href="http://members.tripod.com/~mphawaii/">http://members.tripod.com/~mphawaii/</a>	PO Box 11690, Honolulu, HI 96828 USA	mph@hawaii.rr.com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NOW) - Equal Marriage NOW	미국	<a href="http://www.now.org/issues/marriage/index.html">http://www.now.org/issues/marriage/index.html</a>	1100 H St, NW, 3rd floor, Washington, DC 20005 USA	
	Religious Coalition for the Freedom to Marry (RCFM)	미국	<a href="http://www.rcfm.org">http://www.rcfm.org</a>	1 Beacon St, Suite 1125, Boston, MA 02108 USA	info@rcfm.org
	Collaborative Law	미국	<a href="http://www.collablaw.org">http://www.collablaw.org</a>	PO Box 306, Asheville, NC 28802 USA	
성소수자 관련 법 제도	Gay and Lesbian Advocates and Defenders (GLAD)	미국	<a href="http://www.glad.org">http://www.glad.org</a>	30 Winter St, Suite 800, Boston, MA 02108 USA	gladlaw@glad.org
	Lambda Legal	미국	<a href="http://www.lambdalegal.org">http://www.lambdalegal.org</a>	120 Wall St, Suite 1900, New York, NY 10005 USA	
	Murdoch University Electronic Journal of Law - E Law [주제별 검색 가능 및 기사 링크 다수]	호주	<a href="http://www.murdoch.edu.au/ewl/ndices/sub-ject/27.html">http://www.murdoch.edu.au/ewl/ndices/sub-ject/27.html</a>		
	Williams Project on Sexual Orientation Law and Public Policy - UCLA School of Law	미국	<a href="http://www.law.ucla.edu/williamsinstitute/issues/index.html">http://www.law.ucla.edu/williamsinstitute/issues/index.html</a>	Public Policy Building Room 2381, Box 95476, Los Angeles, CA 90095 USA	williamsinstitute@law.ucla.edu

부록 0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해외 단체 - B

중점사업	단체명	소재국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성소수자 인권 진반	Amnesty International USA (AIUSA) - Outfront! Lesbians, Gay Men, Bisexuals and Transgender People's Human Rights Program	미국	<a href="http://www.amnestyusa.org/outfront/index.do">http://www.amnestyusa.org/outfront/index.do</a>	5 Penn Plaza, New York, NY 10001 USA	aimember@aiusa.org
	EGALE Canada - Equality for Gays and Lesbians (Egalite pour les Gais et les Lesbiennes)	캐나다	<a href="http://www.egale.ca/index.asp?lang=E">http://www.egale.ca/index.asp?lang=E</a>	3107396 Cooper St., Ottawa, ON, K2P 2H7 Canada	egale.canada@egale.ca
	Gays and Lesbians Initiating Dialogue for Equality (GLIDE)	미국	<a href="http://www.social-glide.org">http://www.social-glide.org</a>	PO Box 931714, Los Angeles, CA 90093 USA	info@social-glide.org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IGLHRC)	미국	<a href="http://www.ighrc.org">http://www.ighrc.org</a>	80 Maiden Lane Suite 1505, New York, NY 10038 USA	ighrc@ighrc.org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ILGA)	벨기에	<a href="http://www.ilga.org">http://www.ilga.org</a>	17 Rue de la Charle, 1210 Brussels, Belgium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NGLTF)	미국	<a href="http://www.nglft.org">http://www.nglft.org</a>	135 Massachusetts Ave, NW Suite 600, Washington, DC 20005 USA	
	People for the American Way - Civil Rights and Equal Rights	미국	<a href="http://www.plaw.org/plaw/general/default.aspx?od=112">http://www.plaw.org/plaw/general/default.aspx?od=112</a>	2000 M S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36 USA	plaw@plaw.org
	Queer Resource Directory (QRD) [주제별 기사 및 단체 링크 다수]	미국	<a href="http://www.qrd.org">http://www.qrd.org</a>		info@qrd.org
	Stonewall - Equality for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영국	<a href="http://www.stonewall.org.uk">http://www.stonewall.org.uk</a>	Tower Building, York Rd., London SE1 7NX UK	info@stonewall.org.uk
	Children of Lesbians and Gays Everywhere (COLAGE)	미국	<a href="http://www.colage.org">http://www.colage.org</a>	1550 Bryant St, Suite 880, San Francisco, CA 94103 USA	
	Gay and Lesbian Immigration Task Force - New South Wales (GLITF NSW)	호주	<a href="http://www.glitf.org.au">http://www.glitf.org.au</a>	PO Box 400, Darlinghurst, NSW 1300 Australia	glitf@dot.net.au
	Immigration Equality, Inc. [(Lesbian and Gay Immigration Task Force)]	미국	<a href="http://www.immigrationequality.org">http://www.immigrationequality.org</a>	40 Exchange Place 17th floor, New York, NY 10005 USA	
	Smith and Hughes Barristers & Solicitors - Out/Law	캐나다	<a href="http://www.smith-hughes.com">http://www.smith-hughes.com</a>	102-4088 Cambie St., Vancouver, BC V5Z 2X8, Canada	rhughes@smith-hughes.com (Rob Hughes)
Partners Task Force for Gay and Lesbian Couples	미국	<a href="http://www.buddybuddy.com/partners.html">http://www.buddybuddy.com/partners.html</a>	Box 9865, Seattle, WA 98109 USA	demian@buddybuddy.com	
인권 진반		미국	<a href="http://www.aclu.org">http://www.aclu.org</a>	125 Broad St. 18th floor, New York, NY 10004 USA	
	Human Rights Campaign (HRC)	미국	<a href="http://www.hrc.org">http://www.hrc.org</a>	640 Rhode Island Ave. NW, Washington, DC 20036 USA	hrc@hrc.org

부록 0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해외 서적 및 비정기 간행물 -A

중점내용	제목	저자/편자	출판사/판본	년도
가족다양성	All Our Families: New Policies for a New Century	Mary Ann Mason, Ariene Skolnick, and Stephen D. Sugarman (편자)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2002
	Family in Transition	Ariene S. Skolnick and Jerome H. Skolnick	Allyn & Bacon, 14th edition	2006
	Handbook of Family Diversity	David H. Demo, Katherine R. Allen, and Mark A. Fine (편자)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Marriages and Families: Changes, Choices, and Constraints	Nijole V. Benokraitis	Prentice Hall, 5th edition	2004
	Normal Family Processes: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	Froma Walsh (편자)	Guilford Press, 3rd edition	2002
	Wider Families: New Traditional Family Forms	Teresa D. Marciano and Marvin B. Sussman	Haworth Press	1991
	Alternatives to Traditional Family Living	Harriet Gross and Marvin B. Sussman (편자)	Haworth Press	1982
	Family-by-Choice: Creating Family in a World of Strangers	Susan Ahern and Kent G. Bailey	Fairview Press	1996
	Not-so-nuclear Families: Class, Gender, and Networks of Care	Karen V. Hansen	Rutgers University Press	2005
	Blended Families: Creating Harmony as You Build a New Home Life	Maxine Marsolini	Moody Publishers	2000
	Blending Families	Eilaine Fantle Shimberg	Berkley Trade	1999
	Steppcoupling: Creating and Sustaining a Strong Marriage in Today's Blended Family	Susan Wisdom and Jennifer Green	Three Rivers Press	2002
	Living Together: A Legal Guide for Unmarried Couples	Toni Lynne Ihara, Ralph E. Warner, and Frederick Hertz	Nolo.com, 11th edition	2001
	Understanding Diverse Families: What Practitioners Need to Know	Barbara F. Okun	Guilford Press	1998
	Feuds about Families: Conservative, Centrist, Liberal, and Feminist Perspectives	Nijole V. Benokraitis	Prentice Hall	1999
	가족이론	Family Law Statute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Uniform Laws	Walter Wadlington and Raymond C. O'Brien (편자)	West Publishing Co., 2nd edition
International Family Law: An Introduction		Barbara Stark	Ashgate Publishing	2005
International Family Law: Conventions, Statutes, and Regulatory Materials		D. Marianne Blair and Merle H. Weiner	Carolina Academic Press	2003
Transformation of Family Law: State, Law, and Family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Mary Ann Gle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All Our Families: New Policies for a New Century		Mary Ann Mason, Ariene Skolnick, and Stephen D. Sugarman (편자)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2002
가족법-규제	All Our Families: New Policies for a New Century	Mary Ann Mason, Ariene Skolnick, and Stephen D. Sugarman (편자)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2002

부록 0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해외 서적 및 비정기 간행물 - B

중점내용	제목	저자/편자	출판사/판본	년도
가족법-미국	An Invitation to Family Law: Principles, Process, and Perspectives	Carl E. Schneider and Margaret F. Brinig	West Publishing Co., 2nd edition	2000
	Families and Law	Lisa J. McIntyre and Marvin B. Sussman (편자)	Haworth Press	1997
	Family Law in Perspective	Walter Wadlington and Raymond C. O'Brien	Foundation Press	2000
	Family Law, Sex and Society	Michael De Cruz and Peter De Cruz	Routledge Cavendish	2003
	Private Lives: Families, Individuals, and the Law	Lawrence M. Friedma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Wadlington and O'Brien Cases and Materials on Domestic Relations	alter Wadlington and Raymond C. O'Brien	Foundation Press; 5th edition	2001
	Case for Same-Sex Marriage: From Sexual Liberty to Civilized Commitment	William N. Eskridge	Free Press	1996
	Civil Wars: A Battle for Gay Marriage	David Moats	Harcourt	2004
	Equality Practice: Civil Unions and the Future of Gay Rights	William N. Eskridge, Jr.	Routledge	2001
	Gay and Lesbian Marriage and Family Reader: Analyses of Problems and Prospects for the 21st Century	Jennifer M. Lehmann (편자)	Richard Altshuler & Associates, Inc./Gordian Knot Books	2001
	Gay Marriage: Why It is Good for Gays, Good for Straights, and Good for America	Jonathan Rauch	Owl Books, 2nd edition	2004
	Lesbian Step Families: An Ethnography of Love	Janet M. Wright	Haworth Press	1998
	Long Arc of Justice: Lesbian and Gay Marriage, Equality, and Rights	Richard Moh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동성 결혼	Marriage and Same-Sex Unions: A Debate	Lynn D. Wardle, Mark Strasser, William C. Duncan, and David Organ Cookidge (편자)	Praeger Publishers
Same-Sex Marriage and the Constitution		Evan Gerstman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Same-Sex Marriage: the Legal and Psychological Evolution in America		Donald Cantor, Elizabeth Cantor, James C. Beck, and Campbell D. Barrett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6
Same-Sex Marriage: the Moral and Legal Debate		Robert M. Baird and Stuart E. Rosenbaum (편자)	Prometheus Books, revised edition	2004
Why Marriage Matters: America, Equality, and Gay People's Right to Marry		Evan Wolfson	Simon & Schuster	2004
Why Marriage?: The History Shaping Today's Debate over Gay Equality		George Chauncey	Basic Books	2005

부록 0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해외 서적 및 비정기 간행물 - C

중점내용	제목	저자/편자	출판사/판본	년도
성소수자 가족	Families of Value: Gay and Lesbian and Their Children Speak Out	Jane Drucker and Johanna Drucker	Plenum Publishing Corp.	1988
	Families We Choose	Kath Weston	Columbia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1997
	Lesbian and Gay Families Speak Out: Understanding the Joys and Challenges of Diverse Family Life	Jane Drucker	Perseus Publishing	2001
	Our Families, Our Values: Snapshots of Queer Kinship	Robert Goss and Amy Adams Squire Strongheart (편자)	Haworth Press	1997
	Same Sex Intimacies: Families of Choice and Other Life Experiments	effrey Weeks, Brian Heaphy, and Catherine Donovan	Routledge	2001
	Friends and Lovers: Gay Men Write about the Families They Create	Michael Lowenthal and John D. Preston	Plume	1996
	No Place Like Home: Relationships and Family Life among Lesbians and Gay Men	Christopher Carringt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ermanent Partners: Building Gay and Lesbian Relationships That Last	Betty Berzon	Plume, revised edition	2004
	Family, Unvalued: Discrimination, Denial, and the Fate of Binational Same-Sex Couples under US Law	Human Rights Watch and Immigration Equality	Human Rights Watch/Immigration Equality	2006
	Always My Child: A Parent's Guide to Understanding Your Gay, Lesbian, Bisexual, Transgendered or Questioning Son or Daughter	Kevin Jennings and Pat Shapiro	Fireside	2002
	Lesbians and Gays in Couples and Families: A Handbook for Therapists	Joan Laird and Robert-Jay Green (편자)	Jossey-Bass	1996
	Out of the Twilight: Fathers of Gay Men Speak	Andrew Gottlieb	Haworth Press	2000
	Complete Lesbian and Gay Parenting Guide	Ariene Istar Lev	Berkley Trade	2004
	A Family and Friend's Guide to Sexual Orientation	Bob Powers	Routledge	1996
	Fatherhood for Gay Men: An Emotional and Practical Guide to Becoming a Gay Dad	Kevin McGarry	Harrington Park Press	2003
	Gay Dads	David Strah and Susanna Margolis	Tarcher	2004
	Lesbian and Gay Parenting Handbook: Creating and Raising Our Familie	April Martin	Perennial	1993
	Reinventing the Family: Lesbian and Gay Parents	Laura Benkov	Three Rivers Press	1995
	How It Feels to Have a Gay or Lesbian Parent: A Book by Kids for Kids of All Ages	Judith E. Snow	Harrington Park Press	2004
	Out of the Ordinary: Essays on Growing Up with Gay, Lesbian, and Transgender Parents	Noelle Howey and Ellen Samuels (편자)	Stonewall Inn Editions	2000
Gay and Lesbian Families: A Bibliography	Joan Nordquist	Research and Research Services	2000	
Rainbow Family Values: A Family Formation Guide for Lesbian and Gay Couples	Michael S. Piazza	Sources of Hope Publishing House	1995	
Loving Someone Gay	Donald H. Clark	Celestial Arts, 4th revised edition	2005	
What If Someone I Know Is Gay?: Answers to Questions about Gay and Lesbian People	Eric Marcus	Price Stern Sloan	2000	

부록 0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관련 해외 서적 및 비정기 간행물 - D

중점내용	제목	저자/편자	출판사/판본	년도
성소수자 공동체 - 에이즈	AIDS, Identity, and Community: The HIV Epidemic and Lesbians and Gay Men	Gregory Herek and Beverly Greene (편자)	Sage Publications, Inc.	1995
성소수자 - 인권	Law and Sexuality: The Global Arena	Carl F. Stychin and Didi Herman (편자)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0
	Sexuality and Human Rights: A Global Overview	Helmut Graupner and Phillip Tahmindjis	Haworth Press	2005
성소수자 - 인권: 법률	Created Equal: Why Gay Rights Matter to America	Michael Nava and Robert Dawidoff	St. Martin's Griffin	1995
	A Legal Guide for Lesbian and Gay Couples	Hayden Curry, Denis Clifford, and Frederick Hertz	Nolo.com, 13th edition	2005
	Gay and Lesbian Rights: A Guide for GLBT Singles, Couples and Families	Brette McWhorter Sember	Sphinx Publishing	2003
	Rights of Lesbians, Gay Men, Bisexuals, and Transgender People: The Authoritative ACLU Guide	ACLU	New York University Press, 4th edition	2004
	Courting Justice: Gay Men and Lesbians v. the Supreme Court	Joyce Murdoch and Deb Price	Basic Books	2002
성소수자 인권: 정치	Gaylaw: Challenging the Apartheid of the Closet	William N. Eskridge, Jr.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Straightforward: How to Mobilize Heterosexual Support for Gay Rights	Ian Ayres and Jennifer Gerarda Brow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Gay Republic: Sexuality, Citizenship and Subversion in France	Enda McAuliffe	Ashgate Publishing	2005
성소수자 친지	Politics of Gay Rights	Craig A. Rimmerman, Kenneth D. Wald, and Clyde Wilcox (편자)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Between Gay and Straight: Understanding Friendship Across Sexual Orientation	Lisa M. Tillmann-Healy	Altamira Press	2001
	Navigating Differences: Friendships between Gay and Straight Men	Jammie Price	Haworth Press	1999
	Gay Men's Friendships: Invincible Communities	Peter M. Nard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

발행일 2006년 11월 28일

가격 : 비매품

ISBN :89-954328-6-3 03320

---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편  
발행인 : 김선우 이종현

---

펴낸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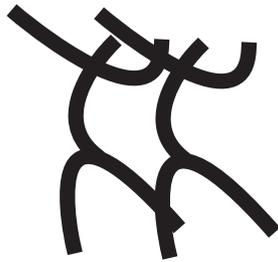
**도서출판 해울**  
122-050)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12-4번지 201호  
등록번호:119-90-83475(2005.5.16)  
전화:02-357-6064/팩스:02-357-6068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10-370)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183번지 묘동빌딩 302호  
전화 : 82-02-7457942  
팩스 : 82-02-7447916  
이메일 : chingu@chingusai.net  
홈페이지 : <http://chingusai.net>

---

기획 구성 :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준비팀  
해외 자료 조사 번역 : 송유석  
교정 : 이민철, 사마트만  
디자인 : 김병석

이 자료집은 국가인권위원회 2006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에 의한 것이며,  
이 자료집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이 자료집은 국가인권위원회 2006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에 의한 것이며,  
이 자료집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